



[2019. 8. 20.] [366 , 2019. 8. 20.,] () 044 - 200 - 5745

1

1 () 「 」
. < 2005. 10. 17.>

1 2() 「 」 (" ") 2 6 2

1. (" ") : 18

가. 41 1 18
. 41 1 12 가 2

2. (" ") : 18

가. 41 1 12
. 41 1 6 가 2

1 64 1 「 」 2 5 (")
") (" ")
18

1. 41 2 18
2. 41 2 12 가 2

「 」 (" ") 3 6 (" ")
) 1 2 18 2
16
[「 」 2 10 (" ")]

[2017. 7. 19.]
[1 2 1 3 <2017. 7. 19.>]

1 3() 2 8 " " 「 」 1
. < 2013. 3. 24., 2017. 7. 19.>

[2012. 5. 18.]
[1 2 <2017. 7. 19.>]

2 () 3 1 3 " 20 "
「 」 2 1 3 가 (" "), 2
1 3 (" ") 15 4
(" ") 20 ()

. < 1988. 11. 8., 1997. 12. 15., 1998. 9. 5., 1999. 3. 24., 2005. 10. 17., 2007. 11. 23.,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15. 7. 7.>

3 () 3 2 . < 1991. 2. 22., 1993. 7. 31.,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08. 8. 28., 2012. 5. 18., 2017. 1. 18.>

- 1. 22 25
- 2. 38 , 42 2 42 4 44 51 ,
가 , ,
- 3. 76 (2) • 77 87 •
- 4. 9 (90 93)
- 5. 10 (94 106 106 2)
- 6. 116
1 5
100 70 . < 1991. 2. 22.>

3 2 <1991. 2. 22.>

2

4 () 7 1

7 1 4 " "

- 1.
- 2.
- 3. 15
- 4.

[2015. 7. 7.]

4 2() 9 1 4 " "

- 1. , (降雪) (視界)가 가
 - 2. (潮流), (針路) 가 가
 - 3. (漁船群) 가
 - 4.
- [2015. 7. 7.]

5 () 13 " 가 . <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1. 가
- 2. 가
- 3. 가
- 4.

1 2 4 가

, 가 .< 1997. 12. 15., 2012. 5. 18., 2014. 11. 19., 2017. 7. 28.>

[2012. 5. 18.]

6 () 14 " " .<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14 가 1 .

< 1997. 12. 15., 2012. 5. 18., 2014. 11. 19., 2017. 7. 28.>

[2012. 5. 18.]

7 () <2015. 7. 7.>

15 1 . 1 .< 2001.

7) .< 2001. 7. 26., 2012. 5. 18.>

<2015. 7. 7.>

4 1 24 .

,가 2

15 2 7 1

.< 2015. 7. 7.>

15 2

1 (4) .< 2015. 7.

7.>

1. .

2. ,

3.

4. ,

5.

8 () ,

.< 2015. 1. 6.>

9 () .

1 1 . 1 2

.< 2014. 1. 8.>

1 , .

.< 2014. 1. 8.>

1.

2.

3.

4.

[2014. 1. 8.]

10 () 16 , . < 1997. 12. 15.,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

1. 「 」
2. 「 」
- 3.
- 4.
- [1991. 2. 22.]
- [2012. 5. 18.]

11 () 17 . < 1999. 6. 24., 2015. 7. 7.>

- 1.
2. 24 , .
- 3.
4. 가 가 가
5. 가 가 가 (遺髮) . < 2012. 5. 18.>

12 () 18

- , 가 2 . < 2012. 5. 18.>
- 1 . < 1997. 12. 15., 2012. 5. 18.>
- 1.
 - 2.
 - 3.
 - 4.
 - 5.
- 1 가 . < 1997. 12. 15., 2012. 5. 18.>

13 () <1999. 6. 24.>

- 20 1 5 " " . < 1988. 11. 8., 1997. 12. 15., 2001. 7. 26., 2007. 4. 13.,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14. 1. 8.>
- 1.
 - 2.
 - 3.
 - 4.
 - 5.
 6. <2017. 1. 18.>
 7. 「2006 」 ()

14 () 20 . < 1999. 3. 24., 2001. 7. 26., 2012. 5. 18.>

- 1. : 1 . , 1 2 .
- 2. : 2
- 3. <1999. 3. 24.>
- 4. : 4

15 () 21 5 , 가
 . 21 4 3 가
 . < 1991. 2. 22.>
 가 1 ,
 가 .
 21 ,
 가 .< 1997. 12. 15., 1999. 8. 24., 2008. 3. 14., 2017. 1.
 18., 2017. 7. 19.>
 [1991. 2. 22.]

3

16 () 22 4 . . 1 . 1 . 1 .
 가 ,
 가 . < 1999. 3. 24., 2012. 5. 18.>

가

<1988. 11. 8.>

17 () 25 3 " " 「
 」 3
 . , 1 3 . <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1. 가
- 2.
- 3.
- 4.
- 5.
- 6.
- 7.

[2005. 10. 17.]

4

18 <2019. 4. 15.>

19 () 38 3 " " . <

2013. 3. 24.>

- 1. 30
- 2.

[2012. 5. 18.]

19 2() 5 3 1 (" ") 42 2 4 6 42 2 1
(가)

2 1 1

6

2 ()

[2017. 1. 18.]

19 3() 42 4 2 106 2 2
" " 1 2 .

[2017. 1. 18.]

20 () 43 1 " " . < 2013. 3. 24.>

- 1. , ,
- 2. () ()

)

3.

4.

5.

6. 가

7.

8. 가

9.

10.

11.

[2012. 5. 18.]

[] 「2006 」

20 2() 44 2 3 . < 2008. 3. 14., 2008. 12. 19., 2012. 5. 18., 2016. 6. 30.>

- 1. 가 () 가
- 2. 가
- 3. ()

1

8 3

.< 2008. 3. 14.>

[2001. 7. 26.]

20 3() 44 2 3

.< 2008. 3. 14.>

1

1

8 4

.< 2008. 3. 14.>

[2001. 7. 26.]

21 () 44 3 45 3

7

8 2

() .< 1997. 12. 15., 1999. 3. 24., 1999. 6. 24., 2000. 3. 8., 2001. 7. 26., 2005. 10. 17., 2008. 3. 14., 2008. 12. 19., 2012. 5. 18., 2019. 4. 15.>

45 1 8 5 .< 1999. 6. 24., 2001. 7. 26.>

[2012. 5. 18.]

22 () 가

9

()

[2012. 5. 18.]

23 () 45 3 10 ()

.< 2012. 5. 18.>

1

가

.<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2. 5. 18.]

24 () 45 3 " "

.< 2013. 3. 24.>

1.

2.

1

3.

(가)

45 3

7

1 가

2

23

[2012. 5. 18.]

25 <1997. 12. 15.>

26 () 45 3 (「 」 36 1) . <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07. 8. 17., 2008. 3. 14., 2011. 4. 11., 2012. 5. 18., 2017. 1. 18.>

- 1.
 2. 가 가
 - 3.
 - 3 2. 56 가
 4. 87 1 ()
 5. 109 ()
 6. 57 .
 7. 「 」 ())
- 21 1 1
- . < 2008. 12. 19., 2012. 5. 18.>
<2015. 7. 7.>

27 () 가

- . <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1 9 ()
- . < 2012. 5. 18.>
- 1.
 - 2.
 - 3.

28 () . <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2. 5. 18.]

29 <2005. 10. 17.>

30 () . < 1997. 12. 15., 2008. 3. 14.>

31 () . < 1990. 1. 3.,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2008. 3. 14., 2012. 5. 18.>
1 . < 1990. 1. 3.,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2008. 3. 14., 2012. 5. 18.>

- 1.
- 2.
- 3.
- 4.

32 <1999. 3. 24.>

33 <1999. 3. 24.>

34 () 8 15
 「 36 1 (1
 1 12 31 18 30 ,
) () ,
 ()

. < 1990. 1. 3., 1991. 2. 22., 1993. 7. 31., 1997. 12. 15., 1999. 3. 24., 2000. 3. 8., 2005. 10. 17., 2007. 8. 17., 2008. 3. 14., 2008. 12. 31., 2011. 4. 11., 2012. 5. 18., 2017. 1. 18., 2017. 7. 19.>

- 1. <1999. 3. 24.>
- 2. <2007. 8. 17.>
- 3. <2000. 3. 8.>

4. 1 (6 가 3.5 , 4.5)

5.

가. 1

8 2

6. <1999. 6. 24.>

[2012. 5. 18.]

34 2() 13 15

2 「 36 1 (1
 1 1 12 31 18 30 ,
) () ,
 ()

. < 2007. 8. 17., 2008. 3. 14., 2011. 4. 11., 2012. 5. 18., 2017. 7. 19.>

1. <2007. 8. 17.>

2.

3. ()

[2005. 10. 17.]

[2012. 5. 18.]

35 () 34 34 2

1

15

15 2

[2012. 5. 18.]

35 2() 10 1 1 " "
. < 1999. 6. 24., 1999. 9. 16.,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1. <1999. 9. 16.>

2.

3.

4. 2 3

10 1 2 " "

. < 2008. 3. 14., 2013. 3. 24.>

[1999. 3. 24.]

[2012. 5. 18.]

36 <1999. 6. 24.>

37 () 16 , 8 1

. < 2012. 5. 18.>

16 2 , (

) . < 2005. 10. 17., 2012. 5. 18.>

가 46 1 1

. < 1997. 12. 15., 1999. 6. 24.,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46 2

. < 1997. 12. 15., 1999. 6. 24., 2008. 3. 14., 2012. 5. 18.>

1.

2.

3.

가

4

가

. <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05. 10. 17., 2012. 5. 18.]

38 ()

17

. <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49 " "

17 4

. <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1. 1 (6 가 3 5 , 4 5

)

2. ()

1 2

. < 1993. 7. 31.,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1997. 12. 15.>

[2005. 10. 17., 2012. 5. 18.]

38 2() 59 , 115 2 23 「 」 2

. < 2001. 7. 26.,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1999. 6. 24.]

4 2 < 2005. 10. 17.>

39 () 18 2 (" ")
17 5

. < 2008. 3. 14.>

- 1. 가 1
- 2. 가 (가) 1
2 1 1

[2005. 10. 17.]

39 2() 39
17 6

. < 2008. 3. 14.>

[2005. 10. 17.]

39 3() 18 5 1
17 7

. < 2008. 3. 14.>

- 1. 가 39 2 1
- 2. 가 1 (가)

[2005. 10. 17.]

39 4() 39 3
18 5 1 17 8

. < 2008. 3. 14.>

[2005. 10. 17.]

5

39 5() 60 4 "

- 1. 1 70
- 2. 2 가 2
- 3. 24 10
- 4. 3 ,
가.
1 6 , 1
14
- 5. 3 4 1 48
1 1 4
- 1. 1 1 3 5
- 2. 1 2 가 2
48
- 3. 1 4 ,
가. 1 4 , 1
- 4. 69 1 14 가 가 70 가
1 가 가
1 4
- 1. , (), ()
)
- 2.
[[2014. 9. 19.](#)]
- 39 6() 61 " , "
- 1. 18 1 8 , 1 40
- 2. 18
가. 1 1
2 15
[[2014. 9. 19.](#)]
- 40 () 62 3 1 ,
18
[[2012. 5. 18.](#)]
[] 「2006 」
- 40 2(가) 63 1 1 가
4

63 1 2

5 .

[2012. 5. 18.]

41 () 64 1

16

. < 1990. 1. 3., 1991. 2. 22.,

1993. 7. 31.,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

1. 200

1

2. 가

2

가

2

3. 「 」 16 1 1

1

64

1

(" ")

16

.< 1991. 2. 22., 1993. 7. 31.,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17. 7. 19.>

1. 1 1

1

2

2. 「 」 16 1 2

2

3. 200

3

1

2

1

2

18

2

16

, () .< 2017. 7. 19.>

[2012. 5. 18.]

42 () 64 3 "

"

. < 2013. 3. 24., 2014. 1. 8., 2016. 1. 13.>

1. , 1 , , 1 ,

가. 2

. 「

」

1

.

3

(3

1

)

2. (1), (1), ,

가. 2

.

3

, 「

」

(" ") (" ")

(海技) 가

3. 가 , 1 , , 1 ,

가. 2

. 「

」

1

가

가 3 (3 1)
 4. 가 (1), (1), ,
 가. 2
 . 가 3 , 가
 1 64 3 , 1
 , , 1 , .< 2014. 1. 8.>
 1. : 1 1
 2. 가 : 1 3
 1 18 2 ,
 가 16) .<
 2013. 3. 24., 2014. 1. 8., 2017. 7. 19.>
 3 , 가 「 .
 」 (" ") 5 . ,
 .< 2014. 1. 8.>
 4 4
 .< 2014. 1. 8.>
 1. 5 3
 2. 2 (1
)
 [2012. 5. 18.]
 43 () 64 4
 18 2 . <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
 1 , 20 (5 .<
) . 1999. 3. 24., 2001. 7. 26.,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6. 1. 13., 2017. 1. 18.>
 1. 18
 2. 12 6 2
 21 3 . " ")
 (1) . ,
 가 가
 < 1987. 12. 7., 1997. 12. 15., 1999. 3. 24., 2008. 3. 14., 2012. 5. 18.>
 1. 40 : 2

- 2. 41 61 : 3
- 3. 62 85 : 4
- 4. 86 : 5
- 5. : 2
- 6. : 1

.< 1987. 12.

7., 2012. 5. 18.>

.< 1987. 12. 7., 1997. 12. 5., 2012. 5. 18.>

- 1. . . . ,
 - 2.
 - 3. . . .
 - 4. ()
- [2012. 5. 18.]

43 2() 43 2
2

, 20 2 ()
) .< 2017. 1. 18.>

1 5 .< 2016. 1. 13.>
[2012. 5. 18.]

43 3() 64 5 " " 2
21 4 1 (" ")

- 1. 100 500 : 1
- 2. 500 1 : 2
- 3. 1 1 500 : 3
- 4. 1 500 : 4

- 1.
 - 2.
 - 3.
 - 4.
 - 5.
- [2015. 7. 7.]

44 () 가 65 119 (" ")
) .< 1991. 2. 22.,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

1 22 .< 1991. 2. 22.,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

1 2

.< 2005. 10. 17., 2012. 5. 18.>

[2012. 5. 18.]

45 () 66 " .< 1997. 12. 15., 2001.

7. 26.,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17. 1. 18.>

1. 가

2. .

3. :

4. :

1

64 1 2

65

.<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

1

22 2

가

, 「

」

, 「

」

60

2 가 1

,

.

1990. 1. 3., 1991. 2. 22., 1997. 12. 15., 2001. 7. 26., 2005. 10. 17., 2007. 11. 23., 2008. 3. 14., 2013. 3. 24., 2017. 1. 18., 2019. 8. 20.>

[2012. 5. 18.]

45 2() 66 2 1 (" ") 5 2 . 66 2 1 (" ") 3 (

65

2) .

2

6

.< 2016. 1. 13.>

5

1. . 3

2. 2 . 5

3. 「 」 2 1 . 10

4. 3

가. 「 」 2 1 4

[2015. 7. 7.]

46 () 68 1 4 " "
 . <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12. 5. 18.]

[] 「2006 」

5 2 가 < 2012. 5. 18.>

46 2(가) 70 4 가 가 1
 12 15 , 1 1 . < 2012. 5. 18.>

[2008. 8. 28.]

[46 2 46 3 <2008. 8. 28.>]

46 3(가) 71 3 " "
 . <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1. 가 가
2. .
3. 가

[1999. 3. 24.]

[46 2 , 46 3 46 4 <2008. 8. 28.>]

46 4(가) 74 1 " "
 " . < 2008. 2. 4., 2008. 3. 14., 2008. 3. 31., 2012. 5. 18., 2013. 3. 24.>

1. 「 」 2 2
2. 「 가 」 1
3. 「 가 」 1

[2005. 10. 17.]

[46 3 , 46 4 46 5 <2008. 8. 28.>]

46 5(가) 74 가 1 20 ,
 1 1 1 가 가 . < 2012. 5. 18.>

[2005. 10. 17.]

[46 4 , 46 5 46 6 <2008. 8. 28.>]

46 6(가) 46 4 가 1
 1 3 가 ,
 가 . < 2008. 8. 28.>

가

1 2 가

[2005. 10. 17.]

[46 5 , 46 6 46 7 <2008. 8. 28.>]

46 7(가) 46 4 가 가
 . < 2008. 8. 28.>

46 4

46 5 가

가

가

.< 2008. 8.

28.>

[2005. 10. 17.]

[46 6 <2008. 8. 28.>]

6 < 2012. 5. 18.>

47 () 76 1

5

. < 2012. 5. 18.>

<2012. 5. 18.>

47 2() 22 1 1 , 2 가 "

" 2 .

[2014. 9. 19.]

47 3() 22 1 1 ("

") 22 3

. < 2016. 1. 13.>

[2014. 9. 19.]

47 4() 100 60

[2014. 9. 19.]

47 5() 22 1

18 2

1

23

() .

[2014. 9. 19.]

47 6(•) 79 1 8 "

" . < 2017. 1. 18.>

1.

2.

3.

4. 125 .

5.

[2014. 9. 19.]

47 7() 82 7 가

5 3 .

2

[1999. 6. 24.]

50 2() 50 1
40 , 60
50 1 가 60

[2007. 4. 13.]

51 () 85 3 18
2 . <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

1 24 ()

.<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

[1999. 6. 24., 2012. 5. 18.]

52 () 85 4 .< 1999. 6. 24.,
2012. 5. 18., 2014. 1. 8.>

- 1.
- 2.
- 3.
- 4.
- 5.
- 6.

1 4 , . 「

」 .< 2014. 1. 8.>

25 2

.< 2014. 1. 8.>

[1999. 6. 24.]

52 2() 87 1 " "
. < 2007. 4. 13., 2008. 3. 14., 2008. 8. 28., 2012. 5. 18., 2013. 3. 24., 2015. 7. 7.>

1. : 「 」
2. : 「 」 25 4 ()

1
. < 2008. 3. 14.>

2
() .< 2008. 3. 14.,
2008. 3. 14., 2013. 3. 24.>

[2005. 10. 17.]

53 () . < 1993. 7. 31., 1997. 12. 15., 1999. 3. 24., 2001. 7. 26., 2012. 5. 18.>

- 1. , ,
- 2. • (「 」 2 3)
- 3.
- 4. • • • • • () • (SGOT • SGPT)
- 5. • •
- 6.
- 7.
- 8.

9. <1999. 3. 24.>
 1 4 7 가
 • () • (SGOT • SGPT) •
 .< 1997. 12. 15., 1999. 3. 24.>
 「 」 15 1 4
 .< 2016. 1. 13.>

- 1. ()
- 2. ()
- 3.

3 .
 <1999. 3. 24.>

54 () 53 1 1 () 6)
 , 3 2 (18 1) ,
 가 (가 3
 3) .< 1997. 12. 15., 1999. 3. 24., 2001. 7. 26., 2012. 5. 18., 2014. 1. 8.>

54 2() 87 2 23 2 . ,
 .< 2005. 10. 17., 2012. 5. 18.>
 [2000. 3. 8.]

55 () 87 「 」 25
 7 .< 2005. 10. 17., 2008. 8. 28., 2012. 5. 18., 2015. 7. 7.>
 1 가 .
 [2001. 7. 26.]

55 2 <2012. 5. 18.>
 7 < 2012. 5. 18.>

56 () 가 91 2
 18

. <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2. 5. 18.]

8 < 2012. 5. 18.>

56 2() 95 5 「 」 11

[2012. 5. 18.]

9 < 2012. 5. 18.>

56 3() 107 4

[2019. 4. 15.]

[56 3 56 4 <2019. 4. 15.>]

56 4() 108 2 " " . < 2013. 3. 24.>

- 1.
- 2.
- 3.
- 4.

[2012. 5. 18.]

[56 3 , 56 4 56 5 <2019. 4. 15.>]

56 5() 110 "

"

. < 2013. 3. 24., 2019.

4. 15.>

- 1. 「 」
- 2. 「 」
- 3.

38 2

[2012. 5. 18.]

[56 4 <2019. 4. 15.>]

57 () 43 2

2

<1999. 6. 24.>

<2001. 7. 26.>

25

. < 1999. 6.

24.,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57 2() 117 2 " "

. < 2012. 5. 18., 2013. 3. 24.>

- 1. 2
- 2. 2

[2009. 5. 25.]
 [57 2 57 3 <2009. 5. 25.>]

10 < 2012. 5. 18.>

57 3() 가 119 1
 2 ()
 . , . < 1991. 2. 22.,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

1

.< 1997. 12. 15., 2008. 3. 14., 2017. 1. 18.>
 [1988. 11. 8.]
 [57 2 <2009. 5. 25.>]

10 2 < 2014. 9. 19.>

57 4() 129 1 ,
 5 4 . < 2015. 7. 7.>

[2014. 9. 19.]

57 5() 49 3 2 (" ")가
 49 3 1

- 1. 가 ,
- 2. 가 , () ,
- 3. 가 (가 ,)
- 4. 가
- 5. 가
 49 3 3 ,

- 1. 49 3 2
 - 2.
 - 3.
 - 4.
- [2014. 9. 19.]

11 < 2012. 5. 18.>

58 () 136 1
 26 「2006 」 1 27 「2006

」 2 . < 2017. 1. 18.>
1 58 3

.< 2017. 1. 18.>

2 26

27 28 .<

2017. 1. 18.>

[2012. 5. 18.]

58 2() 136 2

.< 2017. 1. 18.>

1.

2.

3.

4.

5.

6.

7.

8.

9.

10.

11. ,

12.

13.

14.

15.

16.

136 2 26 27 .

[2012. 5. 18.]

58 3() 137 1 · 3 4 30

.< 2014. 1. 8., 2017. 1. 18.>

1 139

140 1 (" ") 58 2 1

「2006 」

.<

2014. 1. 8., 2017. 1. 18.>

1. 가

2.

3. 「2006 」

4.

5.

2

.< 2017. 1. 18.>

.< 2014. 1. 8., 2017. 1. 18.>

[2012. 5. 18.]

58 4() 137 1 3 " "
2 6 6 .< 2013. 3. 24.>
137 3 " "
.< 2013. 3. 24.>

- 1.
2.
3.

137 4 "
" .< 2013. 3. 24.>

- 1.
2.
3.

137 6 " " 가
.< 2014. 1. 8.>

1. 「 」 8 12 , 18 1
(試運轉)

- 2.

[2012. 5. 18.]

58 5() 138 1
28
138 3

- 1.
2.
3.
4.
5.

138 4 29
138 6 50 3 2
()
31 (
)

.< 2017. 1. 18.>

- 1.
2.

()

[2012. 5. 18.]

58 6() 139 " "
.< 2013. 3. 24., 2014. 1. 8., 2019. 8. 20.>

1. (「 」 2 1 4)
2
2. 125 . 3
3. 「 」 2 3 (.)
4. 「 」 76 77 「 」 60 2 「 」 5
[「 」 (2018 12 31 16160) 45]
5. 「 」 2 1 . 10
1 「2006 」
. < 2014. 1. 8.>
31 2 . < 2014. 1. 8.>
3
. < 2014. 1. 8.>
139
. < 2014. 1. 8.>
[2012. 5. 18.]
- 58 7() 140 1
32
「 」 36 1
() . < 2013. 3. 24.>
1. 58 8 1
2.
3.
4. ()
1
33 . < 2013. 3. 24.>
140 5 10
. < 2013. 3. 24.>
[2012. 5. 18.]
- 58 8() 140 2
1.
2. 7
3. 11 . 7 . 1
4. <2014. 1. 8.>
140 2 58 6 .

[2012. 5. 18.]

58 9() 141 1 34

. < 2013. 3. 24.>

1

2

.< 2013. 3. 24., 2017. 1. 18.>

[2012. 5. 18.]

58 10() 137 1 6 .

[2012. 5. 18.]

12 < 2012. 5. 18.>

58 11() 151 1 2 " "

1.

2. (船籍港)

3.

4. (IMO)

5. ()

6. 42 2 1 (" ") (" "

") , ()

7.

8. 42 2

151 1 3 " "

1. 1 1 5

2. 56 1 , (" ") ,

(" ") , (

)

3.

4. 56

151 1 4 " "

1. 1 1 5

2. 106 1 (" ") (" "

") , ()

3.

4. 106

[2017. 1. 18.]

59 () 155 . < 1991. 2. 22.,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

- 1. : 1 1
- 2. • : 1 1
- 3. : 1 1
- 4. : 1 2
- 5. : 1 5
- 6. : 1 2
- 7. : 1 3

1 「 」
 . , 1 142 가

.< 1996. 4. 22., 1999. 3. 24., 1999. 6. 24., 2000. 3. 8., 2001. 7. 26., 2005. 10. 17., 2012. 5. 18.>

가 1 .< 1997. 12. 15., 2008. 3. 14.>

, , 2 3 .< 2004. 8. 7., 2008. 12. 31., 2017. 1. 18.>

1 5 .< 2011. 4. 1.>

- 1. :
 - 2. :
 - 3. :
 - 4. 7 : 100 60
 - 5. 4 7 :
- 100 50

59 2() 117 1 " " 「 」 2 7
 [2012. 5. 18.]

59 3 <2012. 5. 18.>

60 <2008. 8. 28.>

61 () 21 35 • 37 38
 . < 1997. 12. 15., 2014. 1. 8.>
 가
 .< 1997. 12. 15., 2005. 10. 17.>

62 () 3 ()
 3)
 1. 15 : 2017 1 1
 2. 16 : 2017 1 1

- 3. 17 : 2017 1 1
- 4. 21 : 2017 1 1
- 5. 22 : 2017 1 1
- 6. 23 : 2017 1 1
- 7. 27 : 2017 1 1
- 8. 30 : 2017 1 1
- 9. 31 : 2017 1 1
- 10. 34 2 : 2017 1 1
- 11. 45 : 2017 1 1
- 12. 46 5 가 : 2017 1 1
- 13. 53 : 2017 1 1
- 14. 57 3 : 2017 1 1

[2017. 1. 2.]

< 830 ,1985. 12. 20.>

()

()

< 871 ,1987. 12. 7.>()

1 ()

2 () . 43 3 , 4

5

21 3

(

" ")

(

1)

가

가

1. 40 : 2

2. 41 61 : 3

3. 62 85 : 4

4. 86 : 5

5. : 1

1. . . ,

2.

3. . .

4. ()

3 5

< 891 ,1988. 11. 8.>

. , 13 2 5

60

< 917 ,1990. 1. 3.>

< 946 ,1991. 2. 22.>

()

. , 2

1991 3 1

()

< 1010 ,1993. 7. 31.>

< 64 ,1996. 4. 22.>

1 ()

2

3

59 2

1

. , 51 2

< 36 ,1997. 12. 15.>

()

()

2

()

200

1998 12 31 2

()

< 70 ,1998. 9. 5.>()

1 ()

2 7

8 ()

2 " 9 1 " " 2 2 " , " 9 2 " "
20 2 " , " 9 3 " " 26 4 "

9 ()

< 109 ,1999. 3. 24.>

()

()

1999 6 30

< 123 ,1999. 6. 24.>

()

, 59 2 1999 7 16

()

2

()

1999 6 30

< 133 ,1999. 8. 24.>()

1 ()

2 ()

15 3

" " " "

< 141 ,1999. 9. 16.>

()

()

2

()

1 2

()

1999 9 30

< 160 ,2000. 3. 8.>

()

, 34 35

2000 4 1

()

2001 12 31

59

< 197 ,2001. 7. 26.>

1 ()

2 ()

2

2002 12 31

2

3 ()

2001 12 31

< 222 ,2002. 6. 11.>

< 277 ,2004. 8. 7.>()

< 312 ,2005. 10. 17.>

() . , 3 · 34 2 · 35 · 37 · 38 59
 , 17 2006 4 1 ,
 26 1 3 2 39 39 4 「 」 41
 가 2006 7 1 .
 () 20 25
 1 .
 () 2005 12 31
 , 16 2006 12 31

< 367 ,2007. 4. 13.>

< 381 ,2007. 8. 17.>

< 390 ,2007. 11. 23.> ()

1 ()
 2 22
 23 ()
 2 " 「 」 2 2 " " 「 」 2 1 3 가
 " , " 2 3 " " 2 1 3 " , "
 26 4 " " 15 4 " .
 45 3 " 「 」 7 , 8 1
 " " 「 」 45 , 60 2 " .
 53 3 " 「 」 26 5 " " 「 」 15
 5 " .

24

< 408 ,2008. 2. 4.>()

1 () 2008 2 4 .

2

3 () .

46 3 1 " 「 」 41 1 2 " 「 」 2 2 " .

< 4 ,2008. 3. 14.>(가)

< 4 ,2008. 3. 31.>(가)

1 () .

2 12

13 () .

46 3 2 3 " 「 가 」 " 「 가 」

" .

< 45 ,2008. 8. 28.>

< 80 ,2008. 12. 19.>

< 89 ,2008. 12. 31.>()

1 () 2009 1 1 .

2 ()

34 " " " " .

59 4 " " " " .

16 1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PORT"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53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PORT"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17 8 " " " "

24 " " " ,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5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㉔

< 132 ,2009. 5. 25.>

1 () 2009 8 7 .

2 () 57 2 .

< 147 ,2009. 7. 1.> (

)

1 () 2009 7 1 .

2 (「 」) 「 」 1
9 가 .

< 345 ,2011. 4. 1.>

< 350 ,2011. 4. 11.> (

)

< 465 ,2012. 5. 18.>

1 () . ,

1. 20 , 40 , 46 15 3 (「 」 5 1) : 「2006 」

2. 42 : 3

3. 47 2 : 2015 2 6

4. 50 1 1 : 1

5. 53 1 2 · 8 , 54 , 2() 3 :

2 () 1 1 3
11024

2 「 」
3 () 10 4

4 () 19

5 () 20 1 1

6 () 50 1 1

1 4
50 4

7 () 53 1 2 · 8 54 ()
() 1 5

8 () 2 ()

2 () 1 5

9 () 3 1 5

1 3

() . < 2014.1.8 >

1. 「 」 4 ()

2. 「 」 2 7 (3
2013)

10 () 1 2 42

1. 42 1 1 2 : 42 1 1 3

2. 42 1 3 : 42 1 2 4

1 42 3

2016 12 31 .

11 ()

43 43 2

1

5 .

12 () 2

5 .

13 () 2 11

12

14 () 1 2 2 「

」 8 2 40

12 2 .

15 ()

6 4 " 「 」 3 5 " " 「 」 2 6 " , 1
" 「 」 3 5 " " 「 」 2 6 " , 4 2 " 「 」 3 2
4 " " 「 」 2 3 5 " .

27 2 3 37 2 3 " 「 」 3 2 4 " " 「 」 2
3 5 " .

2 1 " (" ") 116 117 " " 「 」 (" "
) 126 127 " , 2 " 117 " " 127
" .

5 1 " 119 1 " " 129 1 " , 3 "
116 1 " " 126 1 " .

1 " 76 81 " " 「 」 82 • 83 91 " .
2 " 「 」 (" ") 76 1 " " 「 」 (" ")
82 5 " .

3 1 " 76 2 " " " 82 2
 " , 2 " 76 2
 1 " " 82 2 " .
 4 1 " 76 2 " " 82 2 " .
 7 " 76 4 " " 83 1 " .
 8 1 " 81 2 " " 91 3 " ,
 2 " 81 4 " " 91 4 " , 3 " 81 5 1 " "
 " " " 91 5 1 " " "
 , 4 " 81 6 " " 91 6 " .

< 1 ,2013. 3. 24.>()

1 () .
 2 4
 5 () ②
 ③ .
 1 2, 2 , 5 1 , 6 1 , 13 2 , 17
 , 19 , 24 1 , 35 2 1 , 2 ,
 38 2 , 42 1 , 45 1 , 46 , 46 3
 , 46 4 , 48 3 , 49 2 , 52 2 1 ,
 56 3 , 56 4 , 57 2 , 58 4 1 ,
 2 , 3 58 6 1 " "
 " " .
 465 20 46
 " " " " .
 26 3 , 41 2 3 , 3 , 42 2 , 45 3 , 47 2 3 , 50 1
 , 52 2 1 2 , 3 , 56 4 3 , 57 4 , 58 6 2 ,
 58 7 1 . , 2 • 3 , 58 9 1 • 2 , 2 6
 • 9 , 16 35 , 17 6 , 17 8 , 17 9 ,
 24 , 26 2 • 3 • 4 , 32 , 33 34
 " " " " .
 38 2 " " " " .
 16 1 " .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

16 35 24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16 2 "MLTM (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 Phone No. +82 - 2 - 2110 - 8574" "MOF (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 Phone No. +82 - 44 - 201 - 4073" , "sidinfo@mltm.go.kr, WWW.sid.go.kr Jungang - Dong, Gwacheoun - City, Gyeonggi - Do, 427 - 712" "sidinfo@mof.go.kr WWW.sid.go.kr #11, Doum - ro 6, Sejong Special Self - governing City, 339 - 012" ,

" KOR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PORT" "

KOR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25 26 3 • 4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26 2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㉔ <63>

< 63 ,2013. 12. 30.>()

2014 1 1 .

< 65 ,2014. 1. 8.>

1 () . , 9 2 52 1 3

3

2 ()

58 3 .

< 99 ,2014. 9. 19.>

1 () . , .

1. 39 5, 39 6, 47 6, 47 7, 57 4, 5 2 3 : 「2006」

2. 47 2 47 5 , 50 2 , 2, 18 2 , 22 3

23 : 2015 2 6

2 () 1 2 「 」 2 1

2015 2 6 47

2 47 5 , 2, 18 2 , 22 3 23

1 2 「 」 2 2 2015 2 6
 47 5, 18 2 23
 3 ()
 7

< 110 ,2014. 11. 19.> ()
 1 ()
 2 ()

5 2 6 2 " " " "

< 127 ,2014. 12. 31.> ()

< 131 ,2015. 1. 6.>
 1 ()
 2 () 2 ()
 (20 25) 3 2 ()

3 ()
 1 2
 2

3 2
 4 () 2 3
 1 1

1 2

< 148 ,2015. 7. 7.>
 1 ()

2 () 26 3
 45 2 3 (65
 2)

< 183 ,2016. 1. 13.>

1 ()
 2 () 42 1 2
 4 , 가
 5 42 1 2 4
 , 가
 1 , 가 (42 5

) 42 4 5
 1 , 가 2
 42 5
 2

가
 3 () 3 가 (5)

< 194 ,2016. 6. 30.> ()

1 ()
 2
 3 (「 」) 「 」 20 2 1

4 6

< 217 ,2017. 1. 2.> ()

1 ()
 2

< 221 ,2017. 1. 18.>

< 226 ,2017. 3. 15.> ()
. < >

< 249 ,2017. 7. 19.>

1 () 2017 7 19 .
2 () 16 2018
3 31 .

< 251 ,2017. 7. 28.> ()
.

< 290 ,2018. 5. 25.>

2018 5 29 .

< 337 ,2019. 4. 15.>

2019 7 16 . 21 1 , 3 5 2

< 366 ,2019. 8. 20.> ()

1 () .
2 () .
45 3 " 「 」 45 , " 「 」
, 「 」"
58 6 1 4 .
4. 「 」 76 77 「 」
「 」 60 2 5
[「 」 (2018 12 31 16160) 45
]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선장이 통보하여야 할 사항(제6조제2항관련)

이상한 기상의 종류	통보하여야 할 사항
1. 열대성 폭풍우 또는 기타 풍속이 매초 24.5미터 이상의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	가. 일시 및 위치 나. 3시간동안의 기압변화의 상황 다. 풍향(진방위에 의한다)·풍력 및 풍속 라. 파도의 진행방향(진방위에 의한다)·주기·파장 기타 해면의 상태 마. 선박의 침로(진방위에 의한다) 및 속력
2. 배의 상부구조물에 얼음을 얼게 하는 강풍	가. 일시 및 위치 나. 기온 다. 표면 물온도 라. 풍향·풍력 및 풍속
3. 표류물 또는 통상 표류해역 외에 있는 유빙 또는 빙산	가. 일시 및 위치 나. 형상·표류방향(진방위에 의한다) 및 표류속도
4. 침몰물	가. 일시 및 위치 나. 형상 및 심도
5. 기타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이상한 기상	가. 일시 및 위치 나. 개요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7. 1. 18.>

유기구제보험등 및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제19조의3 관련)

1. 유기구제보험등

구 분	통지 시기
가. 법 제4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나. 법 제4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7일 이내
다. 법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 계약의 미체결 사실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30일까지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2. 재해보상보험등

구 분	통지 시기
가. 법 제10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나. 법 제10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7일 이내
다. 법 제10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 계약의 미체결 사실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30일까지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7. 19.>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제57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기간	유효기간
기초안전교육	1.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표상 비상 시 여객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어선의 선박직원, 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친숙훈련, 개인의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개인의 생존기술, 방화 및 소화, 기초응급처치, 해난방지에 관한 사항	4.5일(재교육의 경우에는 2일)	5년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을 제외한다)의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친숙훈련, 개인의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개인의 생존기술, 방화 및 소화, 기초응급처치, 해난방지에 관한 사항	2일(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5년
상급안전교육	구명정 조종사 교육 1. 구명정, 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이 탑재되어 있는 선박(어선을 제외한다)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운항장·운항사 또는 구명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2. 여객선의 선박직원 또는 구명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구명정 조종사에 관한 교육내용	3일(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	5년
	상급소화교육	여객선 선박직원 및 5급항해사, 5급기관사, 4급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의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하고자 하는 자	선원당직국제협약의 상급소화에 관한 교육내용	3일(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응급처치담당자 교육	1. 5급항해사, 5급기관사, 4급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2. 응급처치담당자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의 응급처치담당자에 관한 교육내용	3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	5년
고속구조정 조종사 교육	구명정 조종사 교육 이수자로서 고속구조정이 탑재된 선박에서 고속구조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고속구조정 조종사에 관한 교육내용	1일	5년
여객선 교육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표상 비상시 여객기초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교육내용(친숙훈련, 여객선 안전훈련)	2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5년
	여객선 상급 교육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교육내용(여객선의 특성, 군중관리, 여객과 화물의 안전, 선박의 복원성, 위기 관리 및 인간행동의 특수성)	4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2일)	5년
당직부원 교육	2월 이상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 승무한 자로서 항해당직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기초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항해당직 요령 및 정박당직 요령	5일	없음
	3년 이상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및 운항당직 요령	1월 이상	없음
유능부원 교육	1.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12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갑판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능부원에 관한 교육내용(당직일반, 화물취급, 해양오염방지,	5일	없음

	2.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6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기관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기기보수 등)		
	운항당직부원으로 12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운항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15일 이상	없음
탱커기초 교육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 선장,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의 화물특성·독성·위험·인명보호 및 오염방지 등	3일	없음
	액화가스탱커에 선장,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액화가스탱커의 화물특성·독성·위험·인명보호 및 오염방지 등	3일	없음
선박 조리사 교육	영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박조리사가 되려는 사람	○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그 밖에 선박조리사의 자질 향상 및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일	없음
			그 밖의 사람: 3일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5일	없음

의료 관리 자 교육	자격 취득 교육	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 하고자 하는 자	규정한 의료관리자 교육 내용		
	보수 교육	의료관리자자격증 취득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5 년이 경과하여 의료관리자 자 격을 유지하려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의료관리자 교 육내용	2일	5년
고속선 교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 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원	1. 탈출설비, 배수설비, 구명설비 및 소방설비 의 조작에 관한 사항 2. 여객의 소집 및 유 도, 구명동의 착용의 지원, 기타 비상시에 있어서의 여객의 안 전확보에 관한 사항 3. 선박의 복원성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일	없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 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장 및 갑판부 직원	1. 선박의 특성 및 항행 상의 조건에 따른 조 선방법에 관한 사항 2. 조타시설, 기타 선 박의 항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기관을 제외한다)의 조작에 관한 사항	1일 (재교육 의 경 우에는 0.5일)	2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기관부 직원	기관의 조작에 관한 사 항	1일 (재교육 의 경 우에는 0.5일)	2년
선박 보안 교육	선박 보안 상급 교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박보안책임자로 지정받 으려는 사람	선박보안계획, 선박보 안 등급, 선박보안장 비 및 시설, 선박보안 점검 및 평가, 선박보 안위험 및 대응에 관	2일	없음

		한 사항		
선박 보안 중급 교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를 보조하려는 사람	선박보안계획, 선박보안 점검,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 선박보안 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일	없음
선박 보안 기초 교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선박보안장비, 선박보안 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항	0.5일	없음

비 고

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제항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 나. 1997년 12월 15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부원은 기초안전교육의 교육기간을 3일로 할 수 있다.
 - 다. 상급안전교육과정 중 구명정 조종사 교육·상급소화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재교육의 경우는 2일)로 할 수 있다.
3. 삭제 <2015.1.6.>
4. 1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가 어선의 부원(원양어선의 갑판장 및 조기장을 제외한다)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5. 기초안전재교육대상자가 상급안전재교육을 받는 경우 기초안전교육의 재교육을 면제한다.
6. 유사한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복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교육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7. 삭제 <2012.5.18>
8.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의 부원(원양어선의 갑판장, 조기장을 제외한다)이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 및 어선의 선박직원(원양어선의 갑판장, 조기장을 포함한다)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초안전교육기간은 2일로 한다.
9. 고속선이라 함은 최대속력이 $3.7 \times \nabla^{0.1667}$ 이상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 는 계획 흘수선에 있어서의 배수용적(m^3)을 말한다.
10. 기초안전교육, 선박보안기초교육 및 여객선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선상훈련 내용 및 실시 방법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선상훈련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친숙훈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선상훈련은 선박승선 시부터 1주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선상훈련은 선장 또는 상급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선박직원 등이 시켜야 한다.

11. 삭제 <2012.5.18>

12. 탱커기초교육 중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와 액화가스탱커 기초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로 할 수 있다.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4. 15.>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제4항 관련)

가. 일반건강진단의 합격판정 기준

검사항목		판정 기준
(1) 시력	갑판부 선박직원 및 당직부원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기관부 선박직원 및 당직부원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시력을 통합한 교정시력이 0.4 이상일 것
	통신사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4 이상일 것.
(2) 체격	심한 신체의 박약, 심한 흉곽발육의 불량 그 밖에 선박내의 노동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3)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 폐, 늑막, 심장 또는 신장의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을 것	
(4) 청력	선장 및 갑판부 선원에 있어서는 두 귀 모두, 그 밖의 해원에 있어서는 한 귀 이상이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것. 다만, 선원으로서의 종사경력에 비추어 관련 직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색깔	선장, 기관사, 통신사, 갑판부 당직자 및 운항 당직자는 적색, 청색, 황색, 녹색의 구분이 가능할 것(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	
(6) 운동기능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가락·손·팔뚝 또는 신체 각 부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다만, 장애의 정도가 경증이거나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병후쇠약	병후의 쇠약에 따라 일정기간내의 승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8) 혈당	공복시 125 mg/dl 이하일 것	
(9) 간장 - SGOT	50 IU/L 이하일 것	

- SGPT	45 IU/L이하일 것
<p>※ 비고</p> <p>(1) 검진 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p> <p>(2) 위 표의 검사항목 중 시력과 관련하여 두 눈 중 최소한 한쪽 눈의 경우에는 안구질환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p>	

나. 특수건강진단의 합격판정기준

검 사 항 목	정 상 기 준 치	판 정 기 준
1. CBC(빈혈)		검진 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RBC	4.2~6.3	
- Hb	남자 12.0 이상, 여자 10.0 이상	
- Hct	36.0~52.0	
- MCV	79.0~96.0	
- MCH	26.0~33.0	
- MCHC	32.0~37.0	
- WBC	4.0~10.0	
2. RPR(VDRL) (매독검사)		
3. 소변검사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2.5.18>

선내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제40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주 기	대 상 자	
선내숙지훈련		수 시	모든 선원	
해상인명 안전훈련	소 화 훈 련	매월(여객선은 10일, 국제 항해여객선은 7일)	모든 선원	
	단정훈련	퇴선훈련	매월(국제항해여객선은 출 항 후 24시간 이내)	모든 선원
		구명정 강하	3개월	모든 선원
		진수훈련	1년	모든 선원
해 난 사 고 대 응 훈 련	선제손상 대처훈련 - 충돌 및 좌초 - 추진기관 고장 - 악천후대비 등	6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모든 선원	
	인명사고시 행동요령	해상추락	6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모든 선원
		밀폐공간에서 의 구조	6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모든 선원
	비상조타훈련	3개월	모든 선원	
기름유출 대처훈련		매월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모든 선원	
선박보안 숙지교육		선상직무 수행전 및 필요시	국제항해 에 종사하 는 선박의 모든 선원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2.5.18>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방법(제40조의2제2항 관련)

1. 총 칙

- 가. 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 또는 부원에게는 연속되는 24시간 중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 나. 휴식시간은 2회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1회의 휴식은 최소 6시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 다. 당직계획표는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갑판부의 항해당직

- 가. 항해당직 해기사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 따라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 나. 항해당직 해기사는 당직임무외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항해당직 해기사와 조타자의 임무는 분리되어야 하며, 기상상태·시정 등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된 경우에는 해기사 단독으로 경계를 할 수 있다.
- 라. 선장은 적절한 경계를 위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마. 당직인계시 당직을 인계하는 해기사는 당직을 인수하는 해기사가 당직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을 인계하여야 한다.
- 바. 당직을 인수할 해기사는 선박의 위치·항로 및 속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사. 교대시각에 선박의 조정 또는 피험조치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교대가 연기되어야 한다.
- 아. 항해당직 해기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교를 떠나지 말아야 하며, 선위 및 속력 등을 충분히 점검하여야 한다.
- 자. 항해당직 해기사는 필요시 타기관 및 음향신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차. 항해당직 해기사는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선내 항해장치의 작동시험을 자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카. 항해당직 해기사는 한 당직에 적어도 한 번의 자동조타장치의 수동작동, 자기컴퍼스와 자이로컴퍼스의 오차측정을 하여야 하며, 기타 항해등·신호등·항해장치 및 무선통신장치를 규칙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타. 항해당직 해기사는 시정제한, 선박폭주 구역의 항해, 물표의 탐지 및 플로팅 등을 위하여 레이더를 사용하여야 한다.
- 파. 항해당직 해기사는 시정제한, 기타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 연안 및 선박폭주 구역에서는 최신정보에 의하여 소개정된 가장 큰 축척의 해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 선장 및 항해당직 해기사는 도선사의 승선시 도선사와 긴밀히 협조하되, 도선사의 승선으로 선장 및 항해당직 해기사 임무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여 선박의 이동에 관하여 계속 점검하여야 하며, 도선사의 조치 등에 의심이 갈 경우 도선사의 명확한 설명을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너. 선장은 필요시 정박 중에도 항해당직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며 선위의 확인 및 선내순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관부의 항해당직

가. 기관당직이란 당직을 구성하는 자가 기관구역에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관구역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당직을 말한다.

나. 기관당직 해기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과 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다. 당직을 인계할 경우에는 당직을 인수하는 해기사가 당직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을 인계하여야 한다.

라. 당직을 인수할 자는 선박의 여러 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기관당직 해기사는 기관실에 기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장과 책임을 맡겠다는 통지가 서로 이해될 때까지 기관구역의 운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기관구역이 유인상태인 경우 기관당직 해기사는 항상 추진장치를 조정시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사. 기관실이 정기적으로 무인상태인 경우에 기관당직 해기사는 즉시 호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호출시 즉시 기관실로 가야 한다.

아. 모든 선교의 지시사항은 즉시 이행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기관회 회전방향 또는 속도의 변화는 기록되어야 한다.

자. 기관당직 해기사는 당직 중 수행하는 수리작업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차. 기관실을 운전준비 중인 상태로 둔 경우, 기관당직 해기사는 조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계와 장치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준비상태로 두어야 한다.

카. 당직임무가 끝나기 전에 기관당직 해기사는 주기관 및 보조기계와 관련하여 당직 중 발생한 모든 사건을 적절히 기록하여야 한다.

타. 제한된 시정 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서 기관당직 해기사는 선교의 명령이행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4. 무선통신의 항해당직

가. 무선통신 당직근무자는 국제통신연합(ITU)의 「전파규칙」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에있어서의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무선통신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무선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지정된 무선통신사는 무선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난·긴급 및 안전통신, 무선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 적어도 하루 1회의 선박위치, 전원을 포함한 무선통신설비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5. 항해계획의 확인과 준비

가. 선장은 항해시작 전에 계획된 침로와 청수 등의 필요한 물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예정항해에 필요한 해도 등의 최신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19. 4. 15.>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

1. 인적 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해기사 면허증		종 별	번 호	
선원근로계약	선사명			선 박 명
	항로명			기 항 지
2. 선장의 적성검사 항목 심사				
심 사 항 목		기 준		심사 결과
① 선장책임 운항사고 이력		최근 3년 이내 2회 미만		[] 회
② 해당 항로 운항경력		견습선장 1회 이상 또는 1등 항해사로 5회 이상 왕복		[] 회
③ 취항항로의 표지 숙지여부		취항항로의 항로표지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한 지식		[]/[]
④ 항로특성(조류, 협수로, 암초 등) 숙지 여부		특정 항로의 위험요소 식별 및 항로특성에 관한 지식		[]/[]
⑤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출항 시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한 점검항목에 대한 지식		[]/[]
⑥ 비상상황 대응 능력		화재, 폭발, 타기(舵器) 고장 및 퇴선 등 비상상황별 조치 사항 숙지 및 지식		[]/[]
⑦ 비상시 여객대피 및 의사 결정 능력		비상시 여객 대피 방법과 절차, 군중 관리 방법, 의사결정 방법		[]/[]
⑧ 조난 통신 능력		비상시 조난통신 장비 등 사용능력		[]/[]
비 고	1. 매 항목 모두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①의 경우 선장의 종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3. ②의 견습선장 경력에는 여객을 싣지 않고 공선(空船)으로 항해한 경력도 포함한다. 4. ③부터 ⑧의 경우 매 항목마다 적성심사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이 적합 판정을 하여야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신규항로의 경우 남북한 항로처럼 정치적 상황이 고려되거나 순항여객선 항로처럼 시험운항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시험운항이 합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②의 해당 항로 운항경력에 대한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선박의 종류, 용도, 여객정원, 운항빈도, 항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성심사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확인자 직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주의사항 (1)취업규제 :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객선선장으로 승무 금지 (2)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 충족 여부 서류에는 위 기준에 따른 적성검사판정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신설 2015.7.7.>

제복 지급 기준 및 복제(제47조의7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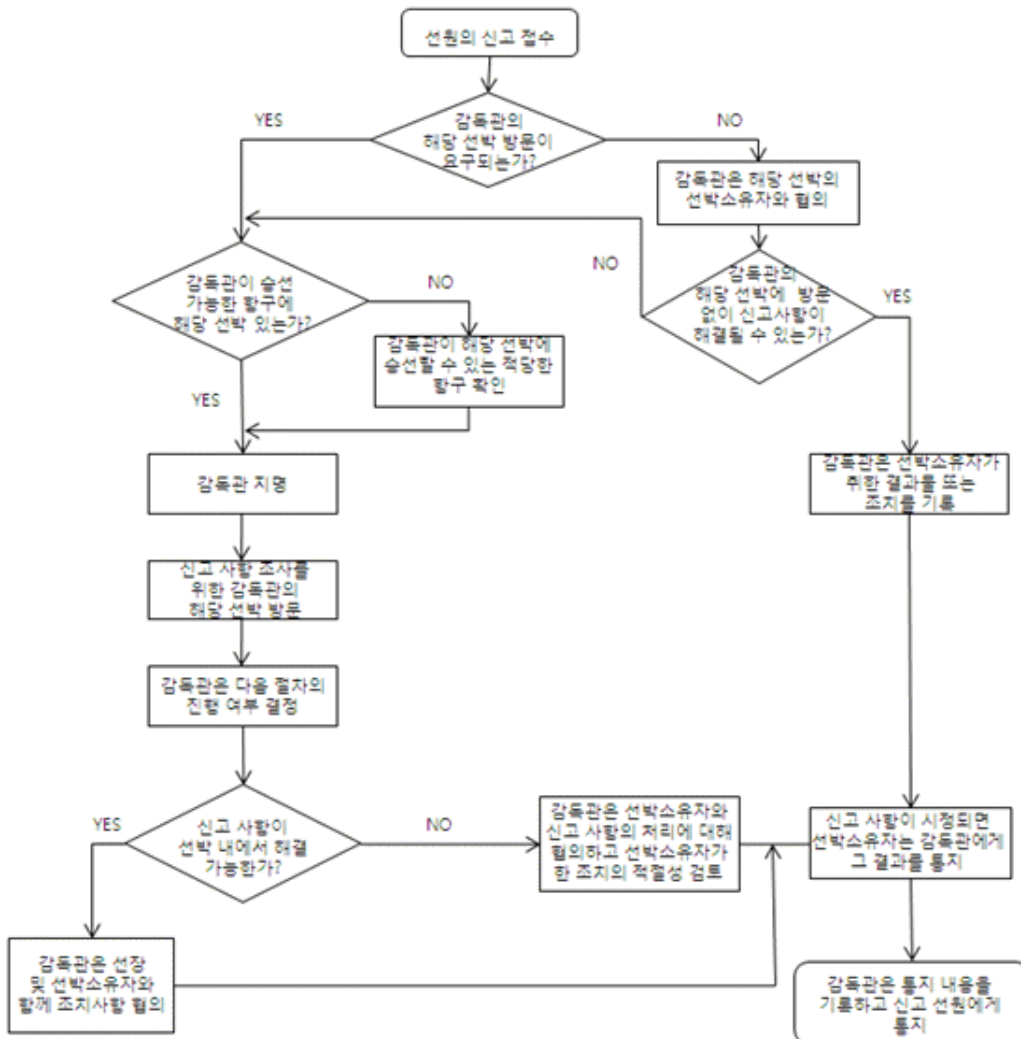
1. 제복 지급 기준 및 시기

지급 대상	종 류				지급수 량	지급주 기	비 고
	근무 복	벨트	모자	신발			
선 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	○	○	○	2벌 (하계용 /동계 용)	2년	직위와 이름을 표 기한 명찰 패용
기 관 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	○	○	○	2벌 (하계용 /동계 용)	2년	
부 원	○	○	○	○	2벌 (하계용 /동계 용)	2년	
여객안전관리선 원 및 그 밖에 제복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직 무 종사원	○	○	○	○	2벌 (하계용 /동계 용)	2년	
비 고 1. 하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복은 근로시간 중에 한하여 착용하며, 선박소유자가 당해 지방의 기후·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승선 근무 중 직무 수행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작업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제복의 종류·재질·제식 및 형상은 선박소유자가 직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 2015.7.7.>

선원의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제57조의4 관련)



비고: 감독관은 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및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을 말한다.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12.5.18>

인증검사 수수료 (제58조의10 관련)

(단위: 원)

구 분	선박의 종류	기본수수료	수수료
해사노동조합선언서 승인			67,360
최초인증검사	제1군에 속하는 선박	67,360	기본수수료 × 톤수계수
갱신인증검사	제2군에 속하는 선박	84,200	
중간인증검사	제1군에 속하는 선박	50,520	
	제2군에 속하는 선박	67,360	
임시인증검사	제1군에 속하는 선박	50,520	
	제2군에 속하는 선박	50,520	

<비 고>

- 위 표에 따른 선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제1군: 유조선·화학제품운반선·가스운반선·산적화물선·고속여객선·고속화물선 및 그 밖의 화물선
 - 제2군: 여객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
- 위 표에 따른 톤수계수는 다음과 같다.
 - 총톤수 500톤 미만: 0.8
 - 총톤수 500톤 이상 1,600톤 미만: 0.9
 - 총톤수 1,600톤 이상: 1
- 공휴일에 하는 인증검사의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국외에서의 인증검사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검사자의 출장에 드는 여비를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5.18>

(표 지)

선원명부
(SEAFARER'S LIST)

선 명 (NAME OF VESSEL) :

5305-104비(1)
85.9.17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2급) 60g/m²)

선박현황
VESSEL CIRCUMSTANCE

선박명 NAME OF VESSEL	
선박번호 OFFICIAL NO.	
선적항 HOME PORT	
선종 TYPE OF VESSEL	
항행구역 NAVIGABLE-AREA	
총톤수 GROSS TONNAGE	
주기관출력 MAIN ENGINE POWER(KW)	
선주명칭 및 주소 NAME & ADDRESS OF SHIPOWNER	
<p>비 고 : “선종”란에는 여객선, 화객선, 산물선, 양곡운반선, 원목운반선, 광석운반선, 석탄운반선, 시멘트운반선, 자동차운반선, 핫코일운반선, 철강재운반선, 모래운반선, 냉동·냉장선, 폐기물운반선, 일반화물선, 풀컨테이너선, 세미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 케미칼가스운반선, LPG운반선, LNG운반선, 기타 유조선, 견인용예선, 이접안용예선, 압항예선, 기타 예선, 관공선, 경찰정, 군함, 급유선, 급수선, 통선(용달선), 준설선, 유람선, 도선, 기타 상선 및 어선 등으로 기재합니다.</p>	

관청기재사항(OFFICIAL DESCRIPTIONS)

관청기재사항(OFFICIAL DESCRIPTIONS)

직책 DUTY	성명 NAME	주민등록 번호 CITIZEN REG. NO.	선원수첩번호 SEAFARERS BOOK NO.	승선공인 EMBARK ATION	하선공인 DISEMBAR KATION	특기사항 REMA RKS
			면허또는자격관계 QUALIFICA TIONS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2.5.18>

(제1쪽)

선 원 명 부

선 명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2쪽)

선박현황	
선박명	
선박번호	
선적항	
선종	
항행구역	
총톤수	
주기관출력	
선주명칭 및 주소	
<p>비 고 : “선종”란에는 여객선, 화객선, 산물선, 양곡운반선, 원목운반선, 광석운반선, 석탄운반선, 시멘트운반선, 자동차운반선, 학교일운반선, 철강재운반선, 모래운반선, 냉동·냉장선, 폐기물운반선, 일반화물선, 풀컨테이너선, 세미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 케미칼가스운반선, LPG운반선, LNG운반선, 기타 유조선, 견인용예선, 이접안용예선, 압항예선, 기타 예선, 관공선, 경찰정, 군함, 급유선, 급수선, 통선(용달선), 준설선, 유람선, 도선, 기타 상선 및 어선 등으로 기재한다.</p>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4.13>

(표 지)

항 해 일 지

선 명 :

5305-113비(1)

190mm×268mm

85.9.17 승인

(인쇄용지(2급) 60g/m²)

(내지 1쪽)

선 박 현 황			
선 박 명			
선 박 번호			
선 적 항			
항 행 구 역			
총 톤 수		주기관 출력(KW)	
선 주	명 칭	(1)	(2)
	주 소		
선 장	성 명	(1)	(2)
	주 소		
	해기면허		
여 객 정 원	1등실		명
	2등실		명
	3등실		명
	합 계		명

(내지 2쪽)

관 청 기 재 사 항

(내지 3쪽)

항 해 표							
출 항		출 수		입 항		출 수	
일 시	항 명	선 수	선 미	일 시	항 명	선 수	선 미

(내지 4쪽)

선 내 훈 련 사 항 기 록 부			
일 시	훈련인원	훈련사항 및 조치사항	특기사항

(내지 5쪽)

항 해 중 발 생 사 항 기 록 부			
일 시	발생장소	개 요 및 조 치 사 항	특기사항

(내지 6쪽)

항 해 중 출 생 자 기 록 부										
년 월 일										
출 생 자	성 명	한 글					본	혼인 중의 자(남·여)		
		영 문						혼인 외의 자(남·여)		
	출생연월일	서기 년 월 일 시 분								
	주 소									
		세대주 성 명				세대주와의 관 계				
	출생장소									
부 모 성 명		부				본				
작 성 자	선 박 명									
	선 장	(인)								
위 기 록 부 송 부 일 시 및 송 부 처										

(내지 7쪽)

항 해 중 사 망 기 록 부				
년 월 일				
사 망 자	주 소	세대주 성 명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망연월일	서기 년 월 일 시 분		
	사 망 장 소			
사 망 사 유				
작 성 자	선 박 명			
	선 장	(인)		
위 기록부 송부일 시 및 송부처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9.3.24>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7.12.15>

속구 목록 (LIST OF FITTING)			
			년 월 일 현재
선 박 명		선 박 번 호	
선 종		항 행 구 역	
총 톤 수		주 기 관 출 력 (K W)	
선 주 명 칭		선 주 주 소	
속 구 명	단 위	수 량	비 고
작성자	직책	성명	㉠

5305-324비
85.9.17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19.>

항행에 관한 보고서			
선 명		선 박 번 호	
선 적 항		선 종	
총 톤 수		주기관출력(KW)	
선 주 명 칭		선 주 주 소	
선 장 성 명		해 기 면 허	
사유발생 일 시	장 소	
보 고 내 용			
조 치 사 항			
<p>「선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고자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p> <p>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p>			

5305-325보

85.9.1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 1. 18.>

유기사실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주소			최종 승선일	
	유기 구제비용 미지급액	송환비용			
송환수당					
그 밖의 비용					
선박상세	선박소유자 성명(법인명)			선박소유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선박소유자(법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선박명			선박번호	
	선박 종류			총톤수	
	항해구역			승선 선원수	
선박소유자(법인) 사업개시일			선박소유자(법인) 사업정지일		
선박소유자의 행방불명 여부 [] 행방불명됨 [] 소재 파악 가능					

「선원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의2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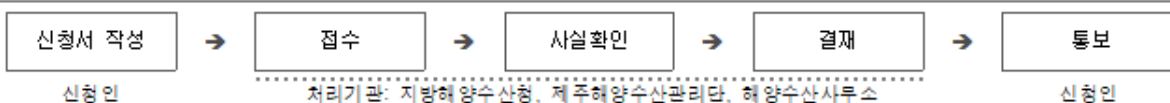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첨부서류	「선원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거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7. 1. 18.>

유기사실 [] 인정 통지서
[] 불인정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최종승선일	
	유기사실인정 신청일	
선박상세	선박소유자 성명(법인명)	선박소유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선박명	선박번호
	선박 종류	총 톤수
	항해구역	승선 선원수
유기 구제비용 미지급액	송환비용	
	송환수당	
	그 밖의 비용	
불인정 사유 (해당되는 경우)		

귀하가 제출하신 유기사실인정신청은 「선원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 인정, [] 불인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직인

※ 참고사항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19.>

<input type="checkbox"/> 승선 <input type="checkbox"/> 하선 <input type="checkbox"/> 승선 취소										공인신청서 (계 <input type="text"/> 명)		처리기간
												즉시
①업체명			②선주국적			<input type="text"/>						
③선명			④선박국적			<input type="text"/>						
⑤운항형태 <input type="checkbox"/> 1. 외항상선 2. 내항상선 3. 연근해어선 4. 원양어선 5. 해외취업상선 6. 해외취업어선												
⑥선박용도 <input type="text"/>						⑦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⑧총톤수 G/T						⑨기관출력			kW			
⑩항행구역 <input type="checkbox"/> 1. 평수 2. 연해 3. 근해 4. 원양												
⑪승선일 또는 종료(취소)일						⑫공인일						
공통기재사항			승선공인				하선 또는 승선취소 공인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직무	⑯해기사면허의종류	⑰급여	⑱승선기간	⑲구직등록번호	⑳최승선일	㉑최공인일	㉒하선/승선취소사유	㉓하선/승선취소이후고용계약	㉔비고	
「선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승선 하선 승선취소 공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								※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승무원명부 3. 선원수첩 또는 선원보증서				
지방해양수산청장 ()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 대사(영사)관 귀하								수수료 1인당 1천원				
주 의 사 항	1. ⑥“선박용도”란은 다음에서 택하여 관련 코드를 명기하십시오. ○상선 110. 여객선 120. 화객선 210. 산물선 220. 양곡운반선 230. 원목운반선 240. 광석운반선 250. 석탄운반선 260. 시멘트운반선 270. 자동차운반선 280. 항공운반선 290. 철강재운반선 310. 모래운반선 320. 냉동냉장선 330. 폐기물운반선 390. 일반화물선 410. 플컨테이너선 420. 세미컨테이너선 510. 원유운반선 520. 석유제품운반선 530. 케미칼운반선 540. 케미칼가스운반선 550. LPG운반선 560. LNG운반선 590. 기타유조선 610. 견인용예선 620. 이접안용예선 630. 압항예선 690. 기타 예선 810. 관공선 820. 경찰정 830. 군함 930. 급유선 940. 급수선 950. 통선(용달선) 960. 준설회선 970. 유람선 980. 도선 990. 기타상선 ○어선 031. 천망 032. 적인망 033. 트롤 034. 연승 035. 유자망 036. 채낚기 037. 봉수망 038. 안강망 039. 통발 040. 기타어선 2. ㉔“비고”란은 하선공인신청시 “예비원”인 경우에만 “예비원”으로 명기하십시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5.10.17>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7. 7. 19.>

승선변경공인신청서										
(계 □명)										
현재 승선 사항	①업체명						②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③선명			④총톤수	()G/T		⑤기관출력		()	
⑥변경일	년 월 일			⑦공인일	년 월 일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현재승선사항			변경사항					
		⑩최종승선일	⑪최종공인일	⑫직무	⑬총톤수 (G/T)	⑭기관출력 (KW)	⑮직무	⑯기간연장일	⑰선박유격	
「선원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변경공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전화 : (-)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승무원명부 3. 선원수첩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수수료 1인당 1	

53337-41111민

95.8.24 승인

(인쇄용지)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17. 7. 19.>

일괄공인신청서						처리기간
(계 □명)						즉시
①업체명			②선주국적	□□		
③선명			④선박국적	□□		
⑤운항형태	<input type="checkbox"/>	1. 외항상선 2. 내항상선 3. 해외취업상선 4. 연근해어선 5. 린양어선 6. 해외취업어선				
⑥선박용도	□□□		⑦선박번호 또는 호출번호			
⑧총톤수	G/T		⑨기관출력	KW		
⑩항행구역	<input type="checkbox"/>	1. 평수 2. 연해 3. 근해 4. 린양				
⑪교대선박	선박명		선박번호		총톤수(G/T)	
					기관출력(KW)	
⑫신청사유				⑬교대방법		
⑭승선일	년 월 일			⑮공인일	년 월 일	
⑯성명	⑰주민등록번호	⑱직무	⑲해기사면허의 종류	⑳급여	㉑승선기간	㉒구직등록번호
<p>「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소 :</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 : (-)</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수산청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사무소장</p>						
구비서류					수수료	
1. 신청서 1통 2. 승무원명부 3. 선원수첩(선원보증서)					1인당 1천원	
주의사항	<p>1. (계 □명) : 일괄공인 신청선원의 총수를 기입하십시오.</p> <p>2. ②, ④항의 굵은 선안 □□은 기입하지 마십시오.</p> <p>3. "⑥선박용도"란은 다음에서 택하여 관련코드를 명기하십시오.</p> <p>○상선 110.여객선 120. 화객선 210. 산물선 220. 양곡운반선 230. 린목운반선 240. 광석운반선 250. 석탄운반선 260. 시멘트운반선 270. 자동차운반선 280. 핫코일운반선 290. 철강재운반선 310. 모래운반선 320. 냉동냉장선 330. 폐기물운반선 390. 일반화물선 410. 풀컨테이너선 420. 세미컨테이너선 510. 린유운반선 520. 석유제품운반선 530. 케미칼운반선 540. 케미칼가스운반선 550. LPG운반선 560. LNG운반선 590. 기타 유조선 610. 견인용예선 620. 이접안용예선 630. 압항예선 690. 기타 예선 810. 관공선 820. 경찰경 830. 군함 930. 급유선 940. 급수선 950. 용달선(통선) 960. 준설선 970. 유람선 980. 도선 990. 기타 상선</p> <p>○어선 031. 선망 032. 저인망 033. 트롤 034. 연승 035. 유자망 036. 채낚기 037. 봉수망 038. 안강망 039. 등발 040. 기타 어선</p> <p>4. "⑬교대방법"은 근무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p>					
	<p>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p>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17. 7. 19.>

예비공인신청서					처리기간	
(계 □명)					즉시	
①업체명				②선주국적	□□	
③선명				④선박국적	□□	
⑤운항형태	□	1. 외항상선 2. 내항상선 3. 해외취업상선 4. 연근해어선 5. 원양어선 6. 해외취업어선				
⑥선박용도	□□□□			⑦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⑧총톤수	G/T			⑨기관출력 KW		
⑩항행구역	□	1. 평수 2. 연해 3. 근해 4. 원양				
⑪승선일	년 월 일			⑫공인일	년 월 일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예비직무	⑯해기사면허의 종류	⑰급여	⑱승선기간	⑲구직등록번호
<p>「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공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p> <p>지방해양수산청장 ○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p>						
구비서류					수수료	
1. 신청서 1통 2. 승무원명부 3. 선원수첩(신원보증서)					1인당 1천원	
주의사항	<p>1. (계 □명) : 예비공인신청선원의 총수들 기입하십시오.</p> <p>2. ②, ④항의 굵은 선안 □□은 기입하지 마십시오.</p> <p>3. "⑥선박용도"란은 다음에서 택하여 관련코드들 명기하십시오.</p> <p>○상선 110.여객선 120. 화객선 210. 산물선 220. 양곡운반선 230. 원목운반선 240. 광석운반선 250. 석탄운반선 260. 시멘트운반선 270. 자동차운반선 280. 핫코일운반선 290. 철강재운반선 310. 모래운반선 320. 냉동냉장선 330. 폐기물운반선 390. 일반화물선 410. 플컨테이너선 420. 세미컨테이너선 510. 원유운반선 520. 석유제품운반선 530. 케미칼운반선 540. 케미칼가스운반선 550. LPG운반선 560. LNG운반선 590. 기타 유조선 610. 전인용예선 620. 이접안용예선 630. 압항예선 690. 기타 예선 810. 관공선 820. 경찰정 830. 군함 930. 급유선 940. 급수선 950. 용달선(등선) 960. 준설선 970. 유람선 980. 도선 990. 기타 상선</p> <p>○어선 031. 선망 032. 저인망 033. 트롤 034. 연승 035. 유자망 036. 채낚기 037. 봉수망 038. 안강망 039. 등발 040. 기타 어선</p>					
	<p>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p>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19.>

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선원수첩번호	
직책		해기면허	
선박명		선박번호	
선종		항행구역	
총톤수		주기관출력 (KW)	
선주명칭		선주주소	
근로계약관계			
사유			
<p>「선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직책 성명 Ⓜ 또는 서명 (전화번호)</p> <p>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p>			

5305-115일(1)

85.9.1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9.3.24>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9.12.15>

(뒤쪽)

영수필증 붙이는 란	주민등록증 사본 붙이는 란
(정부수입인지 10,000원)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선원수첩 명의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착합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선원수첩 발급 및 선원수첩 수령 등을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 임 자 성 명 _____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주택/휴대): _____)		

※ 본인 여부 대조를 위하여 선원수첩 발급 신청 및 선원수첩 수령 시 본인과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1. 굵은 선 한에만 흑색으로 쓰시되,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한자 및 영문 기재란 외의 모든 기재사항은 한글로 바르게 쓰시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성명의 영문란은 여권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인쇄체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4. 국적란은 선원수첩 명의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적과 영주권 부여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5. 선원수첩에 붙일 사진은 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번지, 통, 반(아파트 등의 경우 동, 호수)까지 자세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7. 신원조사기관 통보서와 선원수첩에 붙일 천연색 사진은 반드시 같아야 하고, 신원조사기관 통보서에 사진을 붙인 다음에는 그 통보서와 사진에 걸쳐 반드시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8. 주민등록증 사본 붙이는 란에는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붙이시기 바랍니다.
9. 신청서를 모두 쓰신 후 영수필증 붙이는 란에 정부수입인지를 떨어지지 않게 붙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서 하단의 신원조사기관 통보서를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선원수첩발급 서류의 보관·관리상 필요하니 이 신청서를 훼손하거나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원수첩 발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2.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4.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5.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람으로 통보된 사람

거짓 등에 의한 선원수첩 발급신청 금지

이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에 거짓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원법」 제174조제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7. 7. 19.>

(앞 쪽)

색인번호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			결재	담당	계장	과장
접수일							
신청인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출생지			
국적	다른 국가에서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발급 없음		
	다른 국가에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중	<input type="checkbox"/> 신청 없음		
소지 선원신분증명서 번호 (최초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선원신분증명서 번호	-□□□□-□□□□□□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일			
신원조사 회보일	신원조사 접수번호		신원조사기관 통보일				
<p>「선원법 시행령」 제13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p> <p>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p>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1. 선원수첩 2. 선원신분증명서(신규 발급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내국인(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자만 해당합니다)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없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주의사항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굵은 선 안에만 흑색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결...취...선.....

색인번호	신원조사기관 통보서		
천연색 사진 3.5×4.5cm(얼굴길이 2.5~3.5cm)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정면 상반신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 모자나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휴대)
	주소		

210mm×343mm

(보존용지<1종>120g/㎡)

위 임 장

본인은 「선원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본인의 선원신분증명서 수령을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임받는 사람의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		
	주	소	
	위임자와의 관계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선원신분증명서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위임하는 경우 본인 여부 대조를 위하여 선원신분증명서의 수령 시 본인과 위임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1. 굵은 선 안에만 흑색으로 쓰시되, 지워지지 아니하는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한자 및 영문 기재란 외의 모든 기재사항은 한글로 바르게 적으시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성명란의 영문은 여권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인쇄체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에 사진을 붙인 다음에는 신청서와 사진에 걸쳐 반드시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5. 출생지는 출생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6. 국적란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적과 영주권 부여국을 적으시고, 신청일 현재 다른 국적국 또는 영주권국에서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신청 여부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7. 신원조사기관통보서에 사진을 붙인 다음에는 통보서와 사진에 걸쳐 반드시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8.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번지, 통, 반(아파트 등의 경우 동, 호수)까지 자세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외국인의 경우 신청서 하단의 신원조사기관통보서를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서류의 보관·관리상 필요하니 이 신청서를 훼손하거나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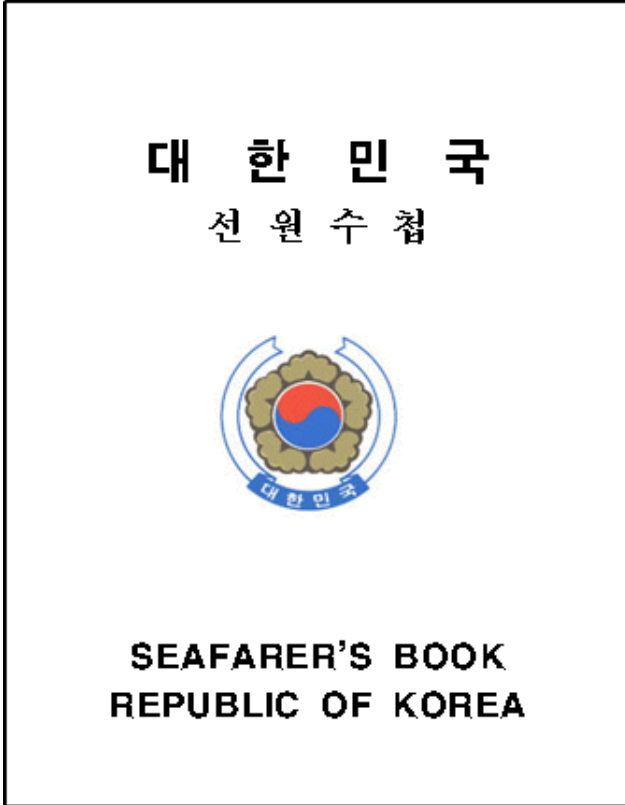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원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2.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4.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5.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람으로 통보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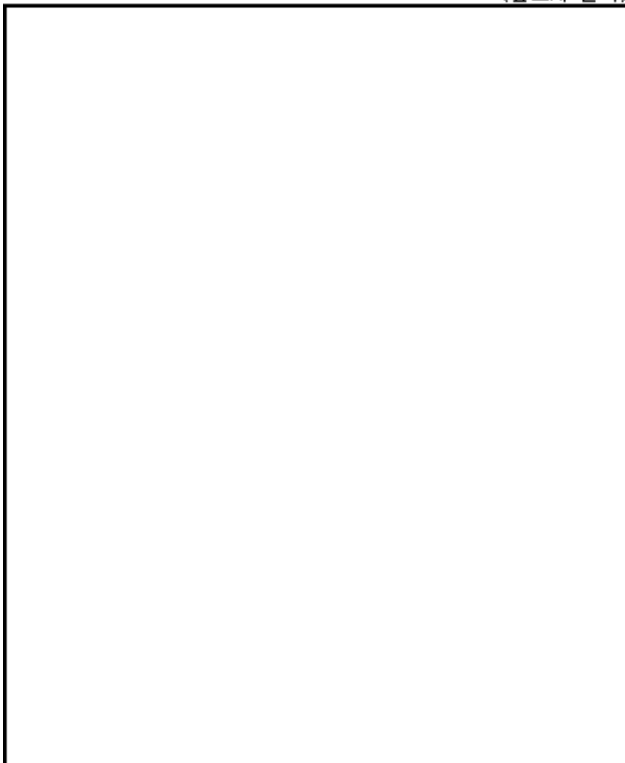
거짓 등에 의한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 금지

이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에 거짓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원법」 제174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7. 19.>
(앞표지 바깥쪽)



88mm×125mm (지질 0.3mm 크로스지)
(앞표지 안쪽)



(내지 1쪽)

이 수첩의 소지인인 선원의 직무를 위하여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I hereby request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rovide the bearer, a seafarer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every possible courtesy and protection.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88mm×125mm(특수용지 95g/㎡)

(내지 2쪽)

대한민국 / REPUBLIC OF KOREA

수첩번호 / Seafarer's Book Number

성명(한글)

Surname / Given name

생년월일 / Date of Birth

주민등록번호 / Citizen Reg. No.

국적 / Nationality

성별 / Sex

발급일 / Date of Issue

발급관청 / Authority

(내지 3쪽부터 10쪽까지)

건강진단서				
CERTIFICATE OF MEDICAL EXAMINATION		년 월 일		
건강진단서 (Health Certificate)	신장 (Height)	cm	혈압 (Blood Pressure)	
	체중 (Weight)	kg	혈액검사 (Blood Test)	
	혈액 (Hemato) 결과: RESULT:		시력 (Visual acuity) 결과: RESULT:	
	색각 (Color Vision)		흉곽 (Circumference of Chest)	cm
	감염/포도상 (Infectious diseases)		감염병 (Infection)	
	정신장애 (Mental disorders)		피부질환 (Skin disorders)	
	심혈관계 (Cardiovascular system)		신경계 (Nervous system)	
	소식위생조건 (Sanitary conditions)		소화계 (Digestive system)	
	담낭 (Gallbladder)		간장 (Liver)	
	표준계 및 흉부X선검사 (Roentgen diagnosis of chest & Chest-X Ray)			
배설기관장애 판함 (Bowel Examination)	빈혈 (Anemia)			
	소변 및 대변 (Urine and Stool)			
건강진단서 (Health Certificate)	검사서 피검사자 신분 확인 여부 (Confirmation that identification documents were checked at the point of examination)		[] (예) [] (아니오)	
	혈액 검출 여부 (Hemato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4-1.8.2)		[] (예) [] (아니오)	
	부르기 리트머스 시험액 검출 여부 (Unacid Hemato satisfactory)		[] (예) [] (아니오)	
	시력 검출 여부 (Visual acuity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4-1.8.2)		[] (예) [] (아니오)	
	색각 검출 여부 (Color Vision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4-1.8.2)		[] (예) [] (아니오)	
	최근 색각검사일 (date of last color vision test)		년 월 일	
	몸치일부 적합성 (Fit for lookout duties)		[] (예) [] (아니오)	
	건강에 제한이나 제약사항이 있는가 (Are there limitations or restrictions on fitness?)		[] (예) [] (아니오)	
	제한이나 제약사항 기술 (If "Yes", specify limitations or restrictions)			
	선원이 승무원으로서 부양(보조)하거나 다른 선원의 건강을 위해 고충을 겪고 있는가 (Is the seafarer suffering from any medical condition likely to be prevented by service at sea or to render the seafarer unfit for such service or to endanger the health of other persons on board?)		[] (예) [] (아니오)	
건강진단 실시일 (Date of Examination)		년 월 일		
유효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년 월 일		
선원의 서명 (Seafarer's signature)		검사 의사의 서명 (Physician's signature)		

(내지 11쪽)

선원건강진단 항목

<일반건강진단>

○대상: 영수구역·영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유효기간: 1년

○검사항목

1. 갑각기, 순환기, 호흡기 및 신경계 그 밖의 기관의 임상·화학적 검사
 2. 시력·색각(「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 및 갑판부담직 부원만 해당함)·청력의 검사
 3. 운동기능검사
 4. 신장·체중·혈색소·혈압·폐활량·혈당·혈당(당뇨)검사·간장검사(BGOT·SGPT) 및 비활간염 효원검사
 6. 역스션검사·적혈구침강속도검사·격막검사 및 말핵에 관한 역스션응부검사
 8. 맥박반응검사
 7. 소변 및 대변검사
 8. 정신질환 및 감염병 검사
-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검사 중 건강진단을 할하는 의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혈당검사·혈당검사·간장검사·비활간염 효원검사·역스션검사 및 소변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함.

<특수건강진단>

○대상: 영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일반건강진단 외에 다음의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함.

○유효기간: 2년 (18세 미만의 사람은 1년)

○검사항목

1. 세비세(빈혈)검사
2. 소변검사(특별검사)
3. 맥박반응특별검사

(내지 12쪽부터 32쪽까지 중 짝수 쪽)

**근로계약관계
(CONTRACT OF EMPLOYMENT)**

선박명 (Name of Vessel)	
선박번호 (Official No.)	
총톤수 (Gross Tonnage)	
주기관출력 (Main Engine Power)	
선종 (Type of Vessel)	
업종 (Type of Business)	
선박소유자명 (Name of Shipowner)	
선적항 (Port of Registry)	
항해구역 (Navigation Area)	
직책 (Duty)	
승선지 (Place of Embarkation)	
승선일 (Date of Embarkation)	
승선계약기간 (Period of Employment)	
관청승인 (Official Stamp)	

(내지 36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의 료 관 리 자 자 격 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O PROVIDE MEDICAL CARE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NAME) (CITIZEN REG NO.)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35조에 따라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VI/4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35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to provide medical care on board.

발급일
(DATE OF ISSUE)

발급기관 「선원법」 제15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ISSUED BY)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인)

SIGNED _____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8 OF THE SEAFARERS ACT.

(내지 36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 승무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BASIC
OIL AND CHEMICAL TANKER CARGO OPERATIONS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NAME) (CITIZEN REG NO.)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 하역을 위한 승무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V/1-1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basic oil and chemical tanker cargo operations.

발급일 _____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ISSUED ON)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경신일(Date of revalidation) 관인(Stamp)

유효기간 만료일 _____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Date of Expiry)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경신일(Date of revalidation) 관인(Stamp)

발급기관 _____
(ISSUED BY) 관인(Stamp)

대한민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37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상급 유조선 승무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ADVANCED
OIL TANKER CARGO OPERATIONS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NAME) (CITIZEN REG NO.)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상급 유조선 하역을 위한 승무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Regulation V/1-1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advanced oil tanker cargo operations.

발급일 _____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ISSUED ON)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경신일(Date of revalidation) 관인(Stamp)

유효기간 만료일 _____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Date of Expiry)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경신일(Date of revalidation) 관인(Stamp)

발급기관 _____
(ISSUED BY) 관인(Stamp)

대한민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38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상급 케미컬탱커 승무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ADVANCED
CHEMICAL TANKER CARGO OPERATIONS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NAME) (CITIZEN REG NO.)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상급 케미컬탱커 하역을 위한 승무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of Regulation W1-1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advanced chemical tanker cargo operations.

발급일 (ISSUED ON)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유효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경신일(Date of revalidation) _____ 판인(Stamp) _____

발급기관 (ISSUED BY)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경신일(Date of revalidation) _____ 판인(Stamp) _____

대한민국 _____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부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39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기초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BASIC
LIQUEFIED GAS TANKER CARGO OPERATIONS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NAME) (CITIZEN REG NO.)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기초 액화가스탱커 하역을 위한 승무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W1-2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basic liquefied tanker cargo operations.

발급일 (ISSUED ON)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유효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경신일(Date of revalidation) _____ 판인(Stamp) _____

발급기관 (ISSUED BY)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경신일(Date of revalidation) _____ 판인(Stamp) _____

대한민국 _____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부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0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상급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ADVANCED LIQUEFIED GAS TANKER CARGO OPERATIONS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NAME) (CITIZEN REG NO.)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상급 액화가스탱커 하역을 위한 승무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Regulation V/1-2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advanced liquefied tanker cargo operations.

발급일 _____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ISSUED ON)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유효기간 만료일 _____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_____
(Date of Expiry) _____ 판인(Stamp)

발급기관 _____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ISSUED BY)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_____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_____
_____ 판인(Stamp)

대한민국 _____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_____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인]
_____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1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구명정조종사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S OTHER THAN FAST RESCUE BOATS**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NAME) (CITIZEN REG NO.)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구명정조종사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Regulation VI/2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s other than fast rescue boats.

발급일 (ISSUED ON)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_____ 판인(Stamp)

유효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_____ 판인(Stamp)

발급기관 (ISSUED BY) _____ 판인(Stamp)

대한민국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인
해양수산사부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2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고속구조정조종사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FAST RESCUE BOATS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NAME) (CITIZEN REG NO.)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고속구조정조종사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VI/2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fast rescue boats.

발급일 (ISSUED ON)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_____ 판인(Stamp)

유효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_____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_____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_____ 판인(Stamp)

발급기관 (ISSUED BY) _____ 판인(Stamp)

대한민국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인
해양수산사부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3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갑판당직 부원 자격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FOR NAVIGATIONAL WATCHKEEPING SERVICE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NAME) (CITIZEN REG NO.)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갑판당직 부원으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II/4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rating is qualified to engage in Navigational Watchkeeping.

발급일
(ISSUED ON)

발급기관
(ISSUED BY)

대한민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부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4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기관당직 부원 자격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FOR ENGINE ROOM WATCHKEEPING SERVICE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NAME) (CITIZEN REG NO.)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기관당직 부원으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III/4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rating is qualified to engage in Engine Room Watchkeeping.

발급일
(ISSUED ON)

발급기관
(ISSUED BY)

대한민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부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6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운항당직 부원 자격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FOR GENERAL WATCHKEEPING SERVICE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NAME) (CITIZEN REG NO.)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64조에 따라 운항당직 부원으로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rating is qualified to engage in General Watchkeeping.

발급일
(ISSUED ON)

발급기관
(ISSUED BY)

대한민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인]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6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갑판유능부원 자격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S ABLE SEAFARER DECK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NAME) (CITIZEN REG NO.)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갑판유능부원으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II/5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subparagraph 6-2 of article 2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rating is qualified to serve as a able seafarer deck.

발급일
(ISSUED ON)

발급기관
(ISSUED BY)

대한민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인]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7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기관유능부원 자격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S ABLE SEAFARER ENGINE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NAME) (CITIZEN REG NO.)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기관유능부원으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III/6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subparagraph 6-2 of article 2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ratings is qualified to serve as a able seafarer engine.

발급일
(ISSUED ON)

발급기관
(ISSUED BY)

대한민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인
해양수산사부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8쪽)

자격증번호:
(CERTIFICATE NO.)

운항유능부원 자격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S ABLE SEAFARER GENERAL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NAME) (CITIZEN REG NO.)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운항유능부원으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Regulation A-VII/2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subparagraph 6-2 of article 2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ratings is qualified to serve as a able seafarer general.

발급일
(ISSUED ON)

발급기관
(ISSUED BY)

대한민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인
해양수산사부소장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내지 49쪽부터 64쪽 까지)

관 청 기 재
OFFICIAL DESCRIPTIONS

--

(뒤표지 안쪽)

유의사항

1. 선원수첩에 공인받은 승선·하선 이력은 승무경력증명서류(정본)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승선계약이 성립 또는 종료된 때에는 즉시 선원수첩에 승선·하선공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 선원수첩은 승선취업 중에는 선장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선원수첩이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공인을 받지 않고 귀국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는 2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승선하지 않은 선원의 선원수첩은 실효가 됩니다.
7. 위의 절차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을 사용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선원수첩은 총 54쪽임.
This book contains 54 numbered pages.

소지인의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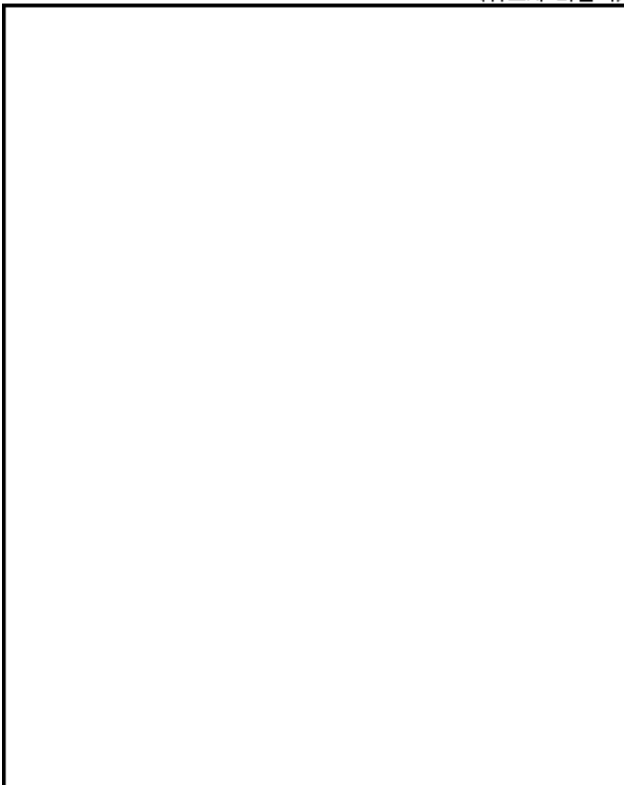
Signature of Bearer _____

소지인 연락처(Information on Bearer)

주소(Address) _____

전화번호(Telephone No.) _____

(뒤표지 바깥쪽)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8.8.24>

(앞 쪽)

대한민국 선원신분증명서		
REPUBLIC OF KOREA SEAFARERS IDENTITY DOCUMENT		
MCF (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 Phone No. +82-44-201-4073		
sidinfo@mcf.mof.go.kr WWWsid.mof.go.kr #11. Doum-ro 8,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339-012		
사진	성/Surname	한글이름
	명/Given name	성별/Gex
	국적/Nationality	출생일월년/Date of Birth
	출생지/Place of Birth	주민등록번호/Personal ID No.
	신체특징/Special Characteristics	
	증명서번호/Document No.	기간만료일/Date of Expiry
	발급일/Date of issue	발급지/Place of issue
	서명/Signature of Seafarer	

88mm×54mm(플라스틱)

(뒷 쪽)

생체인식정보(지문)	
발급관청/Issuing authority: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KOR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is document is a seafarers' identity document for the purpose of the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Convention(Revised), 2003,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is document is a Stand-alone document and not a passport.	
기계판독구역(MRZ)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7. 19.>

<input type="checkbox"/> 선원수첩 <input type="checkbox"/> 선원신분증명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②정정구분 <input type="checkbox"/> 1.신청 <input type="checkbox"/> 2.직권		
③성명	(한글) (영문)			
④해당승선일	년 월 일	⑤공인일	년 월 일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인 적 사 항	⑥주민등록번호			
	⑦선원수첩번호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번호			
	⑧성명			
	⑨출생지			
	⑩기타			
승 선 사 항	⑪승선일			
	⑫하선일			
	⑬공인일			
	⑭회사명			
	⑮선박명			
	⑯기타			
⑰기타사항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 첩, 선원신분증명서)의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㉔ 또는 서명 전화 : (-)			※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3. 증빙서류 1부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수 수 료 1인당 1천원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7호의2서식] 삭제 <2005.10.17>

[별지 제17호의3서식] 삭제 <2005.10.17>

[별지 제17호의4서식] <개정 2017. 7. 19.>

<input type="checkbox"/> 선원수첩 <input type="checkbox"/> 선원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기재사항	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② 국적 (□□)
	③ 성명	(한글) (한문) (영문)	
	④ 주소	도(시) 군(구) 면(동) 번지	
	⑤ 수첩번호 또는 신분증명서 번호	□□□□□-□□□□□□ KQR-□□□□□-□□□□□□	
	⑥ 신청사유	□ 1. 멸실(분실) 2. 훼손 3. 무여백 4. 기타	
	⑦ 멸실(분실)사유		
	⑧ 병역	□ 1. 해군 2. 기타군 3. 면제 4. 미필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 기관 기재란	⑨ 수첩번호 또는 신분증명서 번호	□□□□□□-□□□□□□ KQR-□□□□□-□□□□□□	
	⑩ 재발급일	년 월 일	
구비서류	1.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으로 합니다) 다만, 선원신분증명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2. 선원신분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 재발급에 한합니다)	선원수첩 : 1인당 1만원 선원신분증명서 : 1인당 3천원	
주의사항	1.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⑦멸실(분실)사유는 ⑥신청사유의 “1. 멸실(분실)”에 해당할 때만 기재하십시오. 3. “※”표시한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개정 2017. 7. 19.>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체불임금 등 (체불기간)	임금	(원 월)	
	퇴직일	년 월 일		퇴직금	(원 년)	

선박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선박명		선종 (총톤수)	[]상선 []어선 []기타 (G/T)	
	승선 선원 수	명	운항 또는 조업구역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활동 현황	사업개시일(년 월 일), 사업정지일(년 월 일)
선박소유자의 행방불명 여부	[] 행방불명됨 [] 소재파악 가능
재판상 도산의 신청	[] 신청 [] 미신청

위의 대상 선박소유자는 인정대상 선박소유자로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 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1부 2. 해당 선박소유자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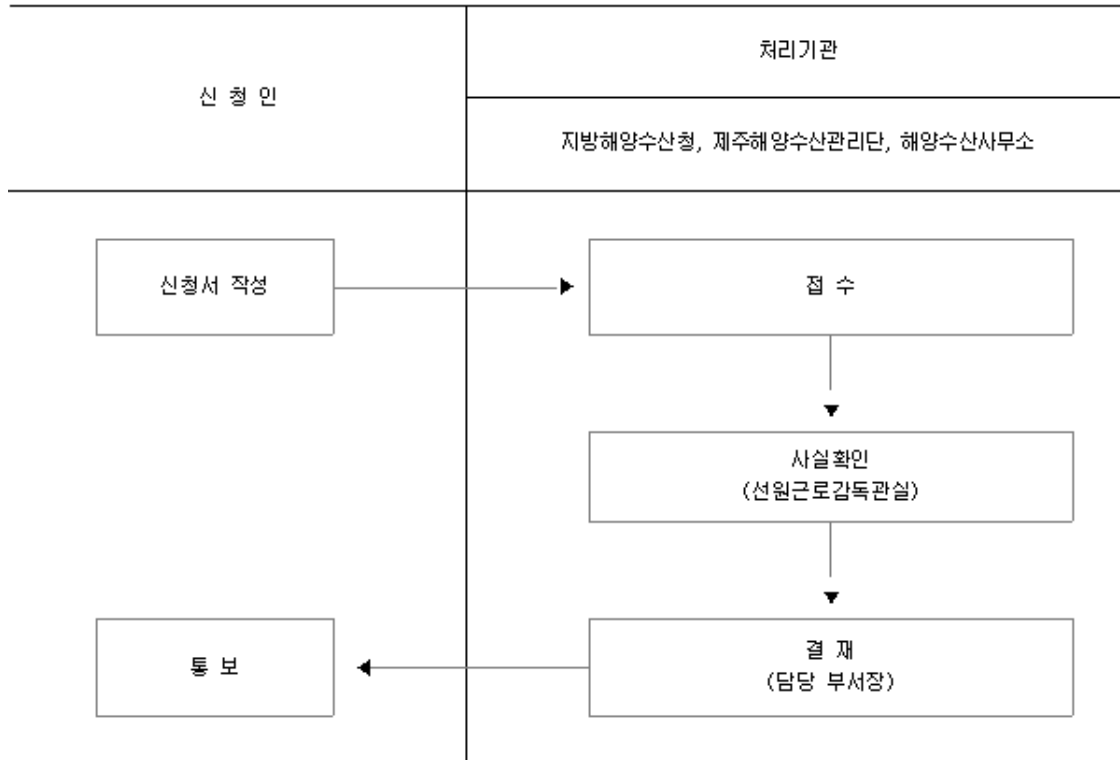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취득)

유의 사항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선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선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퇴직선원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퇴직선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개정 2017. 7. 19.>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신청일	년	월	일	
선박 소유자	성 명		생 년 월 일		
	선박명		선종 (총톤수)	[]상선 []어선 []기타 (G/T)	
	소재지				

귀하가 제출하신 선박소유자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인정, 불인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상기 사업장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퇴직한 자 중 최종 4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4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는 우리청(제주 해양수산관리단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에 확인신청서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인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하시기 바랍니다(불인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7서식] <개정 2017. 7. 19.>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승선일	년 월 일	임금 지급일	매월	일
선박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선박명			선종 (총톤수)	[]상선 []어선 []기타 (G/T)
	소재지	(전화번호:)			
확인 신청 사항		1.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3. 최종 4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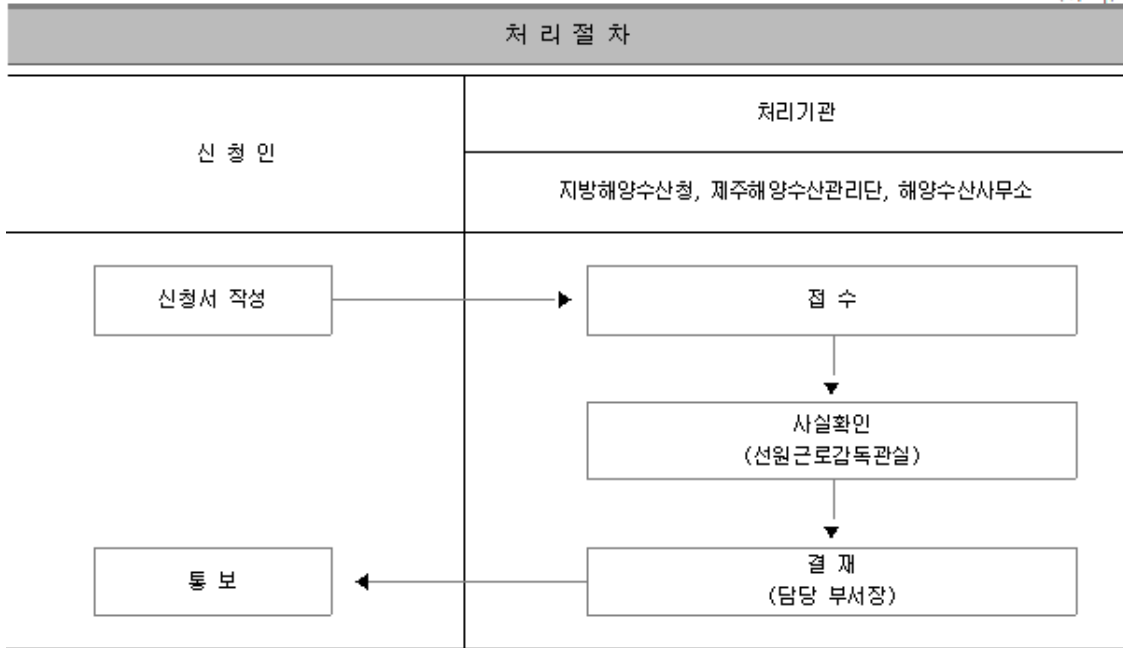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 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또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2.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 등을 증명한 서류 1부(소유자가 발급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 <개정 2017. 7. 19.>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사일	년	월	일

선박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선박명		선종 (총톤수)	[]상선 []어선 []기타 (G/T)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개시일		선원수	명

지급사유 및 지급요건	(인정, 파산, 화의, 정리)의 인정일 또는 결정일	년	월	일	체불 임금	임금	최종 1개 월분	
	(인정, 파산, 화의, 정리)의 신청일	년	월	일		최종 2개 월분		
						최종 3개 월분		
						최종 4개 월분		
						소계		
	신청자의 퇴직일	년	월	일	퇴직금	원 (평균임금×일수)		
					합계	원		

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결용품)]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9서식] <개정 2017. 7. 19.>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

(앞 쪽)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선박 소유자	성 명		생 년 월 일	
	선박명		선종 (총톤수)	[]상선 []어선 []기타 (G/T)
	소재지	(전화번호:)		

< 확인불가 사항 및 그 사유 >

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단서에 따라 상기 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7. 7. 19.>

- [] ① (갑판·기관·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 [] ② (갑판·기관·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 [] ③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상급 유조선·상급 케미컬탱커·기초 액화가스탱커·상급 액화가스탱커)
- [] ④ 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 [] ⑤ 선박조리사 자격증
- [] ⑥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석상이 어두운 판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 ②, ③ 1일
			④, ⑤, ⑥ 2일

신청인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선원수첩번호		※ ⑤의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자격요건구비내용	①당직부원	승무경력	[]갑판부 []기관부	년 월
		당직부원교육 이수일 및 과정		
	②유능부원	당직부원 승무경력	[]갑판부 []기관부	
		당직부원 자격취득 연월일	[]갑판당직부원 []기관당직부원 []운항당직부원	
		유능부원 교육이수 연월일	[]갑판유능부원교육 []기관유능부원교육 []운항유능부원교육	
	③위험물적재선박 승무	승무경력	[]갑판부 []기관부	(선종) (경력) 년 월
		이수교육 연월일	[]탱커기초교육 []탱커보수교육	
		승무하려는 선박		
	④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	해기사 면허		
		자격요건 구비내용 (교육이수, 승무경력 등)		
	⑤선박조리사	교육이수 연월일		교육실시기관
		시험합격 연월일		시험실시기관
⑥의료관리자	교육이수 연월일		교육실시기관	
	시험합격 연월일		시험실시기관	

위와 같이 [] 갑판()·기관()·운항() 당직부원, [] 갑판()·기관()·운항() 유능부원, [] 위험물적재선박 승무, [] 구명정 조종사, [] 고속구조정 조종사, [] 선박조리사 자격증, []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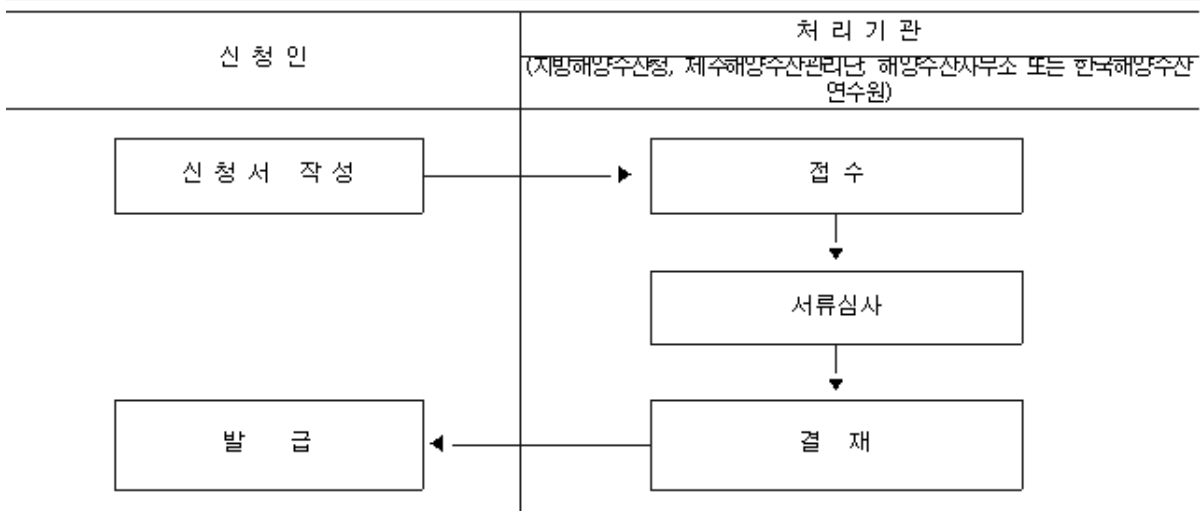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결용품)]

(뒤 쪽)

첨부서류	① (갑판·기관·운항) 당직부원	1.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 증명서류 2. 당직부원교육 이수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② (갑판·기관·운항) 유능부원	1. 승무경력 증명서류 2. 당직부원 자격증 3. 유능부원교육 이수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③ 위험물적재 선박 승무	1.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 증명서류 2. 탱커기초교육 이수증서 또는 탱커보수교육 이수증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④ 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	1.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구명정 조정사 교육 이수증서 또는 고속구조정 조정사 교육 이수증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인당 2천원
	⑤ 선박조리사	선박조리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의료관리자	의료관리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1.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사진 또는 정보통신망에 이용되는 사진이미지 파일). 다만, ①, ②, ③ 신청의 경우에는 선원수첩 미소지자만 해당합니다. ※ 정보통신망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첨부서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비고	① (갑판·기관·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1조 ② (갑판·기관·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③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 ④ 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3조의2 ⑤ 선박조리사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5 ⑥ 의료관리자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51조				

처 리 절 차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05.10.17>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7. 19.>

자격증 번호 : (CERTIFICATE NO.)	사진 가로 3.5cm 세로 4.5cm
<h2 style="margin: 0;">구명정 조종사 자격증</h2> <h3 style="margin: 0;">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S OTHER THAN FAST RESCUE BOATS</h3>	
성명 _____ (NAME)	주민등록번호 _____ (CITIZEN REG NO.)
<p>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로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 64조에 따라 구명정 조종사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p> <p>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Regulation VI/2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s other than fast rescue boats.</p>	
발급일시 (ISSUED ON)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유효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관인 (Stamp)
발급기관 (ISSUED BY)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관인 (Stamp)
대 한 민 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 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80px; height: 8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div>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or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백상지 120g/㎡]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7. 7. 19.>

자격증 번호 : (CERTIFICATE NO.) <div style="text-align: center;"> <h2 style="margin: 0;">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h2> <h3 style="margin: 0;">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FAST RESCUE BOATS</h3> </div>	사진 가로 3,5cm 세로 4,5cm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NAME) (CITIZEN REG NO.)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로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 64조에 따라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VI/2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64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in fast rescue boats.					
발급일시 (ISSUED ON) 유효기간 만료일 (Date of Expiry) 발급기관 (ISSUED BY)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 관인(Stamp)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 관인(Stamp) </td> </tr> </table>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관인(Stamp)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관인(Stamp)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관인(Stamp)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까지 연장함.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관인(Stamp)				
대 한 민 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100px; height: 8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div> SIGNED _____ DIRECTOR GENERAL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or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7. 7. 19.>

증서번호 (CERTIFICATE NO.)								
<h2 style="margin: 0;">승무정원증서</h2> <h3 style="margin: 0;">SAFE MANNING DOCUMENT</h3>								
선박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OFFICIAL NO.)	IMO번호 (IMO NO.)	선적항 (PORT OF REGISTRY)	선종 (TYPE OF VESSEL)	항행구역 (TRADING AREA)	총톤수 (GROSS TONNAGE)	주기관출력 (MAIN ENGINE POWER(KW))	
						(IT :)		
승무정원(계 : 명) SHIP'S COMPLEMENT(TOTAL : PERSONS)								
등급/직무 (GRADE/CAPACITY)	면허증 (CERTIFICATE ; STCW REGULATION)	인원수 (NUMBER OF PERSONS)	등급/직무 (GRADE/CAPACITY)	면허증 (CERTIFICATE ; STCW REGULATION)	인원수 (NUMBER OF PERSONS)	등급/직무 (GRADE/CAPACITY)	면허증 (CERTIFICATE ; STCW REGULATION)	인원수 (NUMBER OF PERSONS)
* Periodically unattended machinery space yes/no								
(관청기사란 OFFICIAL REMARKS) 1. 부가적 자격을 요하는 인원 : 총 명 THE NUMBER OF PERSONNEL REQUIRED OF ADDITIONAL QUALIFICATIONS : TOTAL PERSONS ○의료관리자 : 명(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 : PERSONS) ○응급처치담당자 : 명(PERSON IN CHARGE OF MEDICAL FIRST AID : PERSONS)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자 : 선박직원 명, 부원 명 (QUALIFIED PERSONS ON SHIPS CARRYING HAZARDOUS CARGOES : SHIP-OFFICERS PERSONS, RATING PERSONS) ○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자격자 : 명 (PROFICIENT PERSONS I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 : PERSONS) ○여객안전관리선원 : 명 (PERSON IN CHARGE OF PASSENGERS' SAFETY : PERSONS) 2. 비고(REMARKS) :								
「선원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Safe Manning Document is issued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65 and 66 in Seafarers Act. 발급일시 : (DATE OF ISSUE) 발급기관 : (ISSUED BY)								
대 한 민 국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SIGNED								
DIRECTOR GENERAL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JEJU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OFFICE or DISTRICT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백상지 120g/㎡]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4.9.19.>

자격증 번호 :
(CERTIFICATE NO.)

선박조리사 자격증
CERTIFICATE OF SHIPS' COOK

사 진
가로 3.5cm
세로 4.5cm

성명 _____
(NAME)

생년월일 _____
(DATE OF BIRTH)

위 사람은 「2006 해사노동협약」 제3.2조제3항 및 「선원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선박조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3.2(3)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and article 76(2) of the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as a Ships' Cook.

발급일시:
(DATE OF ISSUE)

발급기관: 「선원법」 제158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직인

(ISSUED BY)

SIGNED _____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8 OF THE SEAFARERS' ACT.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13.3.24>

자격증번호 : (CERTIFICATE NO.) 의 료 관 리 자 자 격 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O PROVIDE MEDICAL CARE	사 진 가로 3.5cm 세로 4.5cm
성명 _____ (NAME)	주민등록번호 _____ (CITIZEN REG NO.)
<p>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로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85조에 따라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p> <p>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VI/4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85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to provide medical care on board.</p>	
발급일시: (DATE OF ISSUE)	
발급기관: 「선원법」 제158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ISSUED BY)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인 SIGNED _____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8 OF THE SEAFARERS ACT.	

148mm×210mm

(인쇄용지 <특급> 120g/m²)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3.24>

교육훈련이수증 (CERTIFICATE)		이 수 교 육 (COURSE COMPLETED)		
선원수첩번호 (SEAFARERS BOOK NO.)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사 진 (3.5cm×4.5cm) </div>	이 수 과 정 (COURSE)	교육기간 (PERIOD)	유효기간 (VALIDITY)
주민등록번호 (CITIZEN REG NO.)				
성 명 (NAME)				
다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Every training course described hereafter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provisions of Regulations of '78 STCW and '95 amended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인)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entrusted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170mm×130mm(브라운용지(1종) 120g/m²)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14.1.8>

(제2쪽 중 1쪽)

표 준 의 료 보 고 서

Standards Medical Report Form

<p>선내 선원의 상병 발생시, 의료관리자나 선장, 그리고 육상의 병원 및 의료진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p> <p>For completion by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 or master, and hospital or doctor ashore, in case of illness or injury affecting seafarers and this form should be kept confidential.</p>	<p>주의. 이 표준의료보고서의 원본은 선내 보관하고, 선장(또는 그 대리인), 육상 병원 의료진 등에는 이 표준의료보고서의 사본을 제출 할 수 있다.</p> <p>Note, Copies of this form should be provided for the seafarer's medical records, ship's Master (or his representatives), and hospital/doctor ashore.</p>				
<p>선장 또는 의료관리자 작성 사항</p> <p>For completion by ship's master or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p>	<p>일자 Date :</p>				
<p>환자성명 Surname of patient, other name :</p>					
<p>생년월일 Date of birth :</p>	<p>선명 Name of ship :</p>				
<p>국적 Nationality:</p>	<p>선주 Shipowner :</p>				
<p>선원수첩번호 Seafarer's Book number :</p>	<p>직책 Shipboard position held :</p>				
<p>선박대리인 또는 대리점</p> <p>Name of ship's representative / Agent on shore :</p>	<p>선박대리인, 대리점 주소 및 연락처</p> <p>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ship's representative on shore :</p>				
<p>환자의 질병, 손상정도 및 선박에서의 치료사항 (필요시 밀봉)</p> <p>Details of illness or injury. Treatment received on board ship (enclose attachments if) :</p>					
<p>질병발생일 Date of onset of illness :</p>	<p>상병발생일 Date injury occurred :</p>				
<p>직무수행 불능기간 Date of ceased work on board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 <p>의료관리자 서명 Signature of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p> </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 <p>선장 서명</p> <p>Signature of ship's master</p> </td> <td></td> </tr> </table>	<p>의료관리자 서명 Signature of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p>		<p>선장 서명</p> <p>Signature of ship's master</p>	
<p>의료관리자 서명 Signature of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p>					
<p>선장 서명</p> <p>Signature of ship's master</p>					

210mm×297mm[백상지 120g/㎡]

(제2쪽 중 2쪽)

육상 의료진 작성사항 For completion by hospital or examining doctor on shore			
진단명 Diagnosis :			
환자검사일 Date when patient first examined :			
검사 세부사항 Details of specialized examinations :			
투약 및 처치 (상품명의 약, 조제, 일반적 처치 기록) Treatment given (generic names of drugs, dosage, route of administration) :			
이후 선박에서의 치료 요구사항 Further treatment to be given on board ship			
선박에서의 주의사항 Precaution to be taken on board ship :			
진료의료진의 기타 관찰 사항 Other observation of hospital or examining doctor :			
추가 의료진료 필요유무 Should see another doctor?	yes []	no []	필요한 진료과목, 날짜 When? Specify speciality, if necessary:
전염성 질환 유무 Is the illness contagious or infectious?	[]	[]	예상 상병기간 Estimated duration of illness :
근무가능 유무 Fit for normal work now	[]	[]	
근무 가능한 일 Fit for normal work from	_____ (날짜지정) (indicate date)		
근무 조정 필요 유무 Fit for restricted work	[]	[]	구체적으로 Specify :
근무 불가 유무 Unfit for work	[]	[]	필요한 일수? For how many days?
요양 필요 유무 Bed rest necessary	[]	[]	필요한 일수? For how many days?
추가 사항 Recommended to be 송환 필요 유무 repatriated 인원 치료 필요 hospitalized		항공기 송환 YES NO Air transport recommended?	동반 필요 유무 YES NO Should be accompanied?
의사 성명 (대문자 기록 또는 스탬프 명시), 담당, 주소, 전화번호 Name of doctor (in capital letters, written or stamped), position held, address, telephone number			
장소 및 일자 Place and date :		의료진 서명 Signature of doctor	
		선장 서명 Signature of ship's master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 제1부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Part I

(주의: 이 선언서는 해당 선박의 해사노동적합증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Note: This Declaration must be attached to the ship's Maritime Labour Certificate)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급됨.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아래의 선박은 협약 제A5.1.3조를 준수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Convention"), the following referenced ship:

선명(Name of ship)	IMO번호(IMO Number)	총톤수(Gross tonnage)

is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5.1.3 of the Convention.

아래 서명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의 사항을 선언합니다.

- (가) 협약의 규정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는 국내 요건들에 완전히 수용되어 있습니다.
- (나) 이러한 국내 요건들은 아래의 인용된 국내 규정들에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 (다) 대한민국 정부는 협약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질적 동등사항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라) 협약 제3장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면제 사항은 아래에 해당 목적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마) 선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특별한 국내 규정은 없습니다.

The undersigned declares, on behalf of the above-mentione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 (a)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e fully embodied in the national requirements referred to below;
- (b) these national requirements are contained in the national provisions referenced below; explanations concerning the content of those provisions are provided where necessary;
- (c)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adopted any substantial equivalencies under Article VI, paragraphs 3 and 4;
- (d) any exemptions gran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itle 3 of the Convention are clearly indicated in the section provided for this purpose below; and
- (e) there are no ship-type specific requirements under national legislation.

210mm×297mm(백상지 120g/㎡)

<p>1</p>	<p>선원의 최소연령 Minimum age (Reg.1.1)</p>	<p>「선원법」 제61조(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p> <p>Article 61(Hours of work of Young Seafarers)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observe the standards on hours of work, hours of rest, etc.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or the protection of minor seafarers under 18 years of age.</p> <hr/> <p>「선원법」 제91조(사용제한)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p> <p>Article 91(Restrictions on Employment)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not appoint a person under 16 years of age as a seafarer.</p> <hr/> <p>「선원법」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Article 92(Prohibition of Night Work)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not have a seafarer under 18 years of age engage in work for at least nine hours at night including hours from midnight to five in the morning;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shipowner has obtained the consent of such a seafarer and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easy work.</p> <hr/> <p>「선원법 시행규칙」 제56조(연소선원의 사용승인) 선박소유자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연소선원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의 승선공인신청서에 해당선원이 18세에 달하는 연월일을 빨간색글씨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Article 56(Employment Approval of Young seafarers)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wishing to obtain employment approval of young seafarers pursuant to Article 91 (2) of the Act shall enter the date when the seafarer reaches 18 years of age in red on the boarding approval application and submit the application to the competent Regional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p> <hr/> <p>「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8조(작업제한)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선원에게 시켜서는 아니되는 작업은 다음의 작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식성물질, 독물 또는 유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물창 또는 탱크안의 청소작업 2. 유해성의 도로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3. 직접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하는 작업 4. 추운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5. 냉동고 안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6. 수중에서 선체 또는 추진기를 검사·수리하는 작업 7. 선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탱크 또는 보일러의 내부에서 행하는 수리작업 8. 먼지 또는 분말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9.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10. 알파선·베타선·중성자선 기타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	--	---

		<p>Article 8(Restrictions on Work)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p> <p>Pursuant to Article 91(3) of the Act, the work which seafarers younger than 18 years of age shall not be engaged shall be as follow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Work in a cargo hold or tank to remove corrosive materials, toxic substances, or harmful materials; b. Work involving the use of harmful paint or solvent; c. Long-time work in direct sunlight; d. Long-time work in cold places; e. Long-time work in cold chamber; f. Work involving inspection or repair of hull or propeller under water; g. Repair work inside a tank or boiler in the state that part or most of hull is submerged; h. Long-time work in places where dust or powder is generated; i. Work involving handling objects of 30Kg or more; and j. Work with risk of exposure to alpha rays, beta rays, neutron rays or other harmful radiation.
<p>2</p>	<p>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ion (Reg.1.2)</p>	<p>「선원법」 제87조(건강진단서)</p> <p>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p> <p>Article 87(Medical Certificate) of the Seafarers' Act</p> <p>A shipowner shall only allow those who have a medical certificate of health in which a medical institution equal to or higher than a hospital level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or a doctor of a clinic meeting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ves them fit duties to be in service onboard a ship as seafarers.</p> <p>「선원법 시행규칙」 제54조(건강진단의 유효기간)</p> <p>제53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색각검사에 대하여는 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1년)으로 하되, 항해중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어선 외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 만료되고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p> <p>Article 54(Period of Validity of Check-up)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p> <p>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general health check-up under Article 53(1) shall be 1 year (6 years for color vision examination) and 2 years for the special health check-up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1 year for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provided, however, that where the period of validity thereof expires on a voyage, the date when the voyage comes to an end(three months after the period of validity of health check-up expires where the period of validity of health check-up of seafarers who work onboard a ship other than fishing vessels expires on a voyage and where three months or longer are remained between the expiration date and the end of the voyage) shall be the expiration date thereof.</p>
<p>3</p>	<p>선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seafarers (Reg.1.3)</p>	<p>「선원법」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p> <p>「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원당직국제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Article 63(Duty of Shipowner for Safe Operation)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who is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watch-keeping of Seafarers") shall carry out the matters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or the safety of ship operation.

「선원법 시행령」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2. 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3. 선장에게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 등 자료를 제공할 것
4. 선원을 교체할 때에는 업무의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선원에게 줄 것

Article 52-2(Responsibility of Shipowner for Safe Oper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

The shipowner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shall perform the matter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or safe operation of the ship pursuant to Article 63(1) of the Act:

- a. Conducting training in order to make a seafarer familiar with obligations on a ship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her ship;
- b. Furnishing a master with a manual of duty on a ship;
- c. Supplying a master with material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concerning safety of life at sea and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 d. Allowing sufficient time for seafarers to take over and accept duties in case of change of seafarers.

「선원법」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 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Article 64(Manning of Qualified Seafarers in the Service of a Ship) of the Seafarers' Act

- (1) The shipowner of a 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seafarers, qualified as set out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eing in service onboard the ship as watch-keeping seafarers in the deck department or the engine department.
- (2) The shipowner of a ship of 500 gross tonnage or more of which the navigation hours are not less than 16 hours shall have not less than three seafarers, qualified under paragraph (1), being in service onboard the ship as watch-keeping seafarers of the deck department.
- (3) The shipowner of a ship carrying dangerous cargoes(only applicable to a ship carrying liquid cargoes in bulk)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seafarers, qualified as set out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eing in service onboard the ship.

		<p>(4) The shipowner of a 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a seafarer, with the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s other than fast rescue boats as set out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eing in service onboard the ship.</p> <p>(5) The shipowner of a 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a seafarer, with qualification necessary for the safe management of passenger ships as set out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eing in service onboard the ship.</p> <p>「선원법」 제116조(선원의 교육훈련)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p> <p>Article 116(Education and Training of Seafarers) of the Seafarers' Act A seafarer and a person who intends to be a seafarer shall receive education and training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p> <p>「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p> <p>Article 11(Standards for Serving Aboard Ship and Duties of Ship's Personnel) of the Ship Personnel Act (1) A shipowner shall hire a marine officer(including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 for serving aboard ship under Article 10-2;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Chapter), who meets the standards for serving aboard ship as one of ship's personnel(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ndards for serving aboard shi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ship's navigation area, size, and use, the generating power of a driving engine, and other elements concerning the safety of the ship's navigation.</p>
<p>4</p>	<p>선원근로계약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Reg.2.1)</p>	<p>「선원법」 제27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Article 27(Clear Statement of Working Conditions) of the Seafarers' Act (1) Where a shipowner enters into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he/she shall make wages, hours of work and other labour conditions specifically clear to a seafarer.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he/she changes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2) When a shipowner enters into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with a seafarer, where the seafarer wishes, the shipowner shall provide opportunity that the seafarer may review the details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and be provided with advice and suggestions about the same.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the shipowner changes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p> <p>「선원법」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p>

-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Article 32(Restrictions on Cancellation of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f the Seafarers' Act

- (1) A shipowner shall neither cancel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nor inflict the temporary retirement, the suspension from duty, the reduction of wages or other punishment on a seafarer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 (2) No shipowner shall cancel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during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he/she is authorized by the Seafarer Labour Relations Commission and he/she a lump sum compensation under Article 98, as in cases where he/she is unable to continue to conduct his/her business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
 - a. The period during which a seafarer is not engaged in his work for medical treatment of an injury or medical treatment of a disease due to his/her work, and 30 days thereafter; or
 - b. The period during which a female seafarer before and after childbirth is not engaged in her work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Labour Standards Act, and 30 days thereafter.

「선원법」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은 경우
- ②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의 범위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Article 33(Advance Notice of Rescission of Seafarer employment contract) of the Seafarers' Act

- (1) Where a shipowner intends to cancel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he/she shall inform a seafarer of the cancellation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n writing with a period of advance notice of not less than 30 days, and where he/she fails to inform the seafarer of such cancellation, he/she shall pay ordinary wages of not less than 30 days;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shipowner or seafar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 a. Where a shipowner is unable to continue to conduct his/her business due to a natural disaster, sinking or destruction of a ship or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 and where recognition by the Seafarer Labour Relations Commission is obtained;
 - b. Where a seafarer leaves a ship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or
 - c. Where a seafarer is submitted to disciplinary measures of forced leave from the ship pursuant to Article 22 (3).
- (2) Where a seafarer intends to rescind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he/she shall inform a shipowner of his/her intention with a period of advance notice of not less than 30 days as stipulated in a collective agreement, the rules of employment or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선원법」 제35조(선원근로계약의 존속)

- ① 선원근로계약이 선박의 항해 중에 종료할 경우에는 그 계약은 선박이 다음 항구에 입항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선박소유자는 승선·하선 교대에 적당하지 아니한 항구에서 선원근로계약이 종료할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선·하선 교대에 적당한 항구에 도착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원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Article 35(Continuance of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f the Seafarers' Act

- (1) Where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s terminated while a ship is out at sea, such contract shall be deemed to continue until the ship enters the next port and unloads all cargoes to be unloaded or lands all passengers who are to leave the ship at the port.
- (2) Where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s terminated at a port which is not fit for a shift of boarding and leaving a ship, a shipowner may continue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until the ship arrives at a port fit for a shift of boarding and leaving the ship and unloads all cargoes to be unloaded and lands all passengers who are to leave the ship at the port within the extent of not exceeding 30 days.

「선원법」 제43조(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 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하며,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Article 43(Preparation and Reporting of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f the Seafarers' Act

- (1) A shipowner who has entered into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with a seafarer shall prepare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n duplicate in which matter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stated, and keep one copy thereof and give one copy thereof to the seafarer concerned, and report such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before the seafarer goes onboard or depa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work onboard.

「선원법」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Article 51(Issuance of Certificate of Seagoing Service) of the Seafarers' Act

Upon receipt of a request to issue a certificate of seagoing service by a seafarer, a shipowner or master shall immediately issue such certificate to the seafarer.

「선원법」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
 -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Article 151(Public Announcement of Rules of Employment) of the Seafarers' Act

- (1) A shipow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post the following documents in a conspicuous place inside of the ship,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a. Documents in which a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rules of employment are stated.

		<p>(2) A shipow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keep the following documents in a sh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One copy of a seafarer labor contract prepared pursuant to Article 43 (1); and c. Documents in which the details of the labor standards and living standards of seafarers are stated in Korean and English, a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선원법 시행령」 제16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기호나 표시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Article 16(Issuance of Certificate of Seagoing Servic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Seafarer's Act In case of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seagoing service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Act, a shipowner or a master shall enter only matters requested by an applicant and shall not leave a signal or a mark that may work against the applicant, or false information thereon.</p> <p>「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2.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4. 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임금에 관한 사항 6.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7.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8.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 9.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10.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11.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p>Article 20(Matters to be Included in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Seafarer's nationality, full name, date of birth and place of birth; b. Shipowner's name(in case of corporation,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and address (in case of corporation, the address of its head office); c. Place and date wher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s made; d. Matters concerning seafarer's duty; e. Matters concerning seafarer's wage; f. Matters concerning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g. Matters concerning termination of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h. Matters concerning protection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etc., the expenses of which are borne by a shipowner; i. Matters concerning seafarer's repatriation expenses; j. Matters concerning seafarer's working condition; and k. Matters concerning a related collective agreement, where provisions about collective agreement are necessary.
<p>5</p>	<p>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Use of any licensed or certified or regulated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Reg.1.4)</p>	<p>「선원법」 제1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구직·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p> <p>Article 110(Prohibition of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of the Seafarers' Act A person other than an institution for registration of job seeking and job offers, a seafarer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12 (3), an organization or institution related to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not be engaged in recruiting or placing seafarers.</p>

	<p>「선원법」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인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모집·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Article 111(Prohibition of Receipt of Money and Other Valuables) of the Seafarers' Act A person who intends to employ a seafarer, a person engaged in job placement, recruitment, employment or management of seafarers or persons engaged in labour and personnel management business of seafarers shall not receive money or other valuables or other benefits, under any circumstances, from a seafarer or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 seafarer in relation to job placement, recruitment, employment, etc.</p> <p>「선원법」 제113조(국제협약의 준수 등) ① 구직·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기관은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해운법」 및 해사노동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선원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선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원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은 선원을 고용하여야 한다.</p> <p>Article 113(Observance, etc.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Seafarers' Act (1) An institution for registration of job seeking and job offers,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agencies, or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related to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at conduct official business with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operat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by method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labour right to labour of seafarers, and observe matters prescribed by this Act, the Shipping Act an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in relation to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of seafarers. (2) Where a shipowner intends to employ a seafarer through a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agency in a country to which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does not apply, he/she shall ascertain whether th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agency meets the standard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and then shall employ a seafarer placed by a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agency that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a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p>
<p>6</p> <p>근로 또는 휴식 시간 Hours of work or rest (Reg.2.3)</p>	<p>「선원법」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의 24시간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항만관청은 입항·출항 빈도, 선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선원이나 단기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기준, 휴식시간의 분할과 부여간격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는 단체협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항만관청은 해당 단체협약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p>

- ⑤ 제4항의 단체협약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부여 간격보다 더 빈번하거나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일수보다 더 긴 기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선박소유자는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 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하거나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⑦ 선박소유자는 제6항에 따라 휴식시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작업을 한 선원 또는 휴식시간 중에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원에게 작업시간에 상응한 보상휴식을 주어야 한다.
- ⑧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間に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Article 60(Hours of Work and Hours of rest) of the Seafarers' Act

- (1) Hours of work shall be 8 hours a day and 40 hours a week; provided, however, that a shipowner and seafarers may extend hours of work by up to 16 hours a week(hereinafter referred to as "overtime work") by mutual agreement.
-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shipowner may order a seafarer who keeps the navigational watch to work overtime within the extent of 16 hours a week, and other seafarers to work overtime within the extent of up to 4 hours a week.
-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a shipowner shall provide seafarers with a minimum of 10 hours in any 24 hours and not less than 77 hours in any one week. In which cases, he/she may split the hours of rest not less than 10 hours in any 24 hours only once, and one of the split times to rest shall continue not less than 6 hours and the interval between consecutive periods of rest not exceed 14 hours.
- (4) Notwithstanding paragraphs (2) and (3), wher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deem it unavoidable in consideration of the frequency of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a port, characteristics of duties of seafarers, etc., it may approve a collective agreement that defines standards of hours of work, and standards for division of the hours of rest and the interval thereof provided for a watch-keeping seafarer or a seafarer who is in service onboard a ship on short voyages. In such cases, the administrator of a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Administration shall approve a collective agreement that meets standards for relaxation of the hours of rest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5) A collective agreement under paragraph (4) shall include contents that grant paid leave more frequent than the interval of paid leave granted under Article 69 (1) or longer than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under Article 70 (1).
- (6) Where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such as seeking the safety of human life, a ship or cargoes, emergencies due to marine pollution or to secure maritime safety, or to rescue human life or other ships, a shipowner may order seafarers to work overtime in excess of hours of work under paragraphs (1) and (2) or do necessary work despite the hours of rest under paragraph (3).
- (7) A shipowner shall provide an adequate period of rest in compensation for and corresponding to hours of work to a seafarer who did necessary work despite being during rest time or a seafarer who did not take the normal rest because he/she was called out to work during the hours of rest pursuant to paragraph (6).
- (8) A shipowner shall provide seafarers with holidays not less than one day a week when a ship is at anchor.

「선원법」 제61조(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Article 61(Hours of work of Young Seafarers)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observe the standards on hours of work, hours of rest, etc.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or the protection of minor seafarers under 18 years of age.

		<p>「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1.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휴식시간을 줄 것 가. 1일 1시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 나. 매 2시간 연속 근로 후 즉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p> <p>Article 39-6(Hours work of Young Seafarers, etc.)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 Hours of work of young seafarers aged less than 18 years shall not exceed eight hours a day, 40 hours a week; b. Young seafarers aged less than 18 years shall be offered each of the following items: (a) Meals break for at least one hour a day; (b) More than 15 minute break immediately after two consecutive hours of work.</p> <p>「선원법 시행규칙」 제40조(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p> <p>Article 40(Documents of Hours of Work, etc.)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Documents where daily hours of work, hours of rest and overtime work of seafarers are to be entered shall be on Attached Form No. 18.</p>
<p>7</p>	<p>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Manning levels for the ship (Reg.2.7)</p>	<p>「선원법」 제65조(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Article 65(Complement) of the Seafarers' Act (1) A shipowner shall determine the number of necessary seafarers(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lement") to satisfy Article 60, Article 64 and Article 76 and obtain approval therefor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2) Wh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approve the complement of a ship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issue a safe manning document, a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3) A shipowner shall always have the number of seafarers stated in a safe manning document being in service onboard a ship, and if a vacancy occurs, he/she shall fill the vacancy without delay;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he/she obtains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deemed impractical to fill a vacancy, such as the relevant ship is in a foreign port, etc.</p>
<p>8</p>	<p>거주설비 Accommodation (Reg.3.1)</p>	<p>「선박안전법」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 2011년 1월 11일 이후에 개정된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하며, 2015년 1월 9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1일 개정 전의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한다.</p>

		<p>Article 26(Standards of Ship's Facilities) of the Ship Safety Act The ship's facilities shall be suitable for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prescribed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p> <p>※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revised on or after 11 January 2011 applies only to new ships constructed or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n or after 9 January 2015, while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revised before 11 January 2011 applies only to existing ships or new ships constructed or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before 9 January 2015.</p> <p>「선원법 시행규칙」 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Article 9(Inspection and Check on Ship)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 master or a person designated by a master shall inspect the State of hygiene and maintenance of crew accommodation not less than once a month and keep and manage the record thereof.</p>
<p>9</p>	<p>선내 오락시설 On-board recreational facilities (Reg.3.1)</p>	<p>「선박안전법」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 2011년 1월 11일 이후에 개정된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하며, 2015년 1월 9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1일 개정 전의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한다.</p> <p>Article 26(Standards of Ship's Facilities) of the Ship Safety Act The ship's facilities shall be suitable for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prescribed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p> <p>※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revised on or after 11 January 2011 applies only to new ships constructed or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n or after 9 January 2015, while the Marine Notice on Ship Facilities Standards revised before 11 January 2011 applies only to existing ships or new ships constructed or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before 9 January 2015.</p> <p>「선원법 시행규칙」 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Article 9(Inspection and Check on Ship)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 master or a person designated by a master shall inspect the State of hygiene and maintenance of crew accommodation not less than once a month and keep and manage the record thereof.</p>
<p>10</p>	<p>식량 및 조달 Food and catering (Reg.3.2)</p>	<p>「선원법」 제76조(선내 급식)</p> <p>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과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p>

Article 76(Providing Meals on Ship) of the Seafarers' Act

- (1) A shipowner shall supply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board a ship with food and water of proper quantity and quality, a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vide equipment necessary for cooking and providing meals, and provide meals on the ship. In such cases, he/she shall consider various cultural and religious backgrounds of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board a ship.
- (2) A shipowner shall have a cook on a 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ok on a ship") who has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ork on board to provide meals in a ship under paragraph (1); Provided, That a 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may be exempted herefrom, or a shipowner may have a person who has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cooking and providing meals on a ship work on board in lieu of a cook on a ship.

「선원법」 제77조(선내 급식비)

-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6조제1항에 따른 식료품 공급을 같음하여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 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에게 선내 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선내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비를 지급할 때에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밝혀야 한다.
- ③ 선내 급식비는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내 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 이상의 선내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Article 77(Cost for Providing Meals) of the Seafarers' Act

- (1) In lieu of supply of foodstuffs under Article 76 (1), a shipowner may disburse expenses incurred in purchase of foodstuffs to provide meals on a 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sts for providing meals on a ship") to the captain and have him/her manage the provision of meals on a ship with approval therefor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n such cases, the captain shall manage so that meals are provided to all seafarers on the ship without discrimination.
- (2) When a ship owner disburses costs for providing meals on a ship, he/she shall disclose a daily standard amount per seafarer.
- (3) Costs for providing meals on a ship shall not be disbursed for uses other than expenses for purchase and transport of foodstuffs to provide meals on the ship.
- (4)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fix the minimum standard amount of costs for providing meals on a ship,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a shipowner shall disburse costs for providing meals on a ship more than the minimum standard amount.

「선원법 시행령」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1. 항해선이 아닌 선박
-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 3. 어선

Article 22-2(Exemption of Mandatory Manning of a Ship's Cook)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

The term "a ship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76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a. A ship that is not a seagoing ship;
- b. A ship the complement of which, under Article 65 (1) of the Act, is less than 10; or
- c. A fishing vessel

		<p>「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선내급식) 선박소유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p> <p>Article 47(Providing Meals on Ship)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establish the Meals Provision Committee comprising more than five committee members including a master and a ship's cook in charge of meals on each ship to ensure the proper amount and quality of meals onboard pursuant to Article 76 (1) of the Act and manage dietary conditions of seafarers; provided.</p>
<p>11</p> <p>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Health and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Reg.4.3)</p>		<p>「선원법」 제7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①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원의 안전·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2. 선원의 직무상 사고·상해 및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 3.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보고와 시정 5.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 6. 선장과 선내 안전·건강담당자의 직무 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Article 79(Standards for Safety and Hygiene and Prevention of Accidents on Ships) of the Seafarers' Act (1)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included in the standards for safety and hygiene and prevention of accidents in a 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ndards for safety and hygiene in a ship") under Article 78 (1) 2: a. Policies on the evalu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dangerousness related to the safety and health of seafarers; b.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an official accident, injury and disease (herein after referred to as "official accident, etc.") of seafarers; c. Programs in a ship to promote the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health of seafarers; d. Inspections, reports and corrections of main causes to hinder the safety in a ship; e. Inspections and reports of an official accident, etc. in a ship; f. Duties of the captain and a person in charge of the safety and health in a ship; 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ommittee on the safety in a ship; h.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p> <p>「선원법」 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Article 82(Responsibility of Shipowners etc.) of the Seafarers' Act (1) A shipowner shall provide seafarers with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devices, etc., and prohibit them from using machinery without a protective device. (2) A shipowner shall have a seafarer who has certain experience or technical skill engage in dangerous work on a ship, a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4) When an occupational accident, etc. of a seafarer occurs, a shipowner shall immediately report such fac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p>

「선원법」 제83조(선원의 의무 등)

- ①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②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Article 83(Obligations, etc. of Seafarers) of the Seafarers' Act

- (1) A seafarer shall observe the matter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danger when he/she works in a ship and maintenance of hygiene in a ship.
- (2) A seafarer may refuse the use of a machine that has no protective equipment or does not operate properly.

「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8(선원의 준수사항)

법 제83조제1항에서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 2. 선내 위험장소임을 알려거나 선원의 접근이 금지·제한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에 표시된 지시에 따를 것
- 3. 화물창 안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도로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를 사용하는 작업, 어로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선체 외부작업 및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 안전그물망 및 구멍의 등의 보호기구나 장비를 사용할 것
- 4. 거주환경의 청결유지 등 개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Article 47-8 (Responsibilities of Seafarers)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Matter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danger when he/she works in a ship and maintenance of hygiene in a ship" under Article 83 (1) of the Act shall mean the following matters:

- a. Seafarers shall be aware of and observe criteria of safety, health and accident prevention on ship under Article 78 (1) 2 of the Act;
- b. Seafarers shall comply with the instructions on signs which indicate either dangerous space on a ship or restricted area for seafarers;
- c. Where seafarers engage in dangerous work such as work in a hold, welding, painting, work handling heavy objects, work involving electricity, fishing, work aloft, work on outer surface of hull, or de-icing, seafarers shall use protective equipment such as safety belt, safety harness, or lifejacket; and
- d. Seafarers shall take thorough care of personal hygiene such as maintaining cleanliness of his/her residential environment.

「선원법」 제91조(사용제한)

- ④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 선박소유자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을 선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에 대하여 임신 중인 여성선원이 선내 작업을 신청하고, 임신이나 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 2. 임신 중인 사실을 항해 중 알게 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⑥ 선박소유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Article 91(Restrictions on Employment) of the Seafarers' Act
 (4) A shipowner shall not assign work harmful or dangerous to pregnancy or childbirth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a female seafarer.
 (5) A shipowner shall not assign work onboard to a pregnant female seafarer;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Where a pregnant female seafarer applies for work onboard with regard to a voyage within the extent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a doctor does not deem such work harmful or dangerous to pregnancy or childbirth; or
 b. Where a pregnant female seafarer comes to know the fact that she is pregnant while at sea and is engaged in work necessary for the safety of the relevant ship.
 (6) A shipowner shall not assign dangerous work onboard or hygienically harmful work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a female seafarer in whose cases one year has not passed after childbirth.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2조(선박소유자의 임무)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용구 등의 공급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위생용품·의료서적 등의 공급
 3.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4. 거주구역·기관실·조리실 등의 환기·채광·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5. 거주구역 및 창고 등에 쥐·벌레등을 없애기 위한 약품의 공급
 6.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 등의 축정에 필요한 기구의 공급. 다만, 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연근해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 사용 작업, 어로작업등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보호 기구의 공급
 8.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9.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 및 위생의 유지를 위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

Article 2(Duties of Shipowner)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A shipowner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matters to prevent danger of work on a ship and maintain hygiene therein under Article 82 (5) of the Seafarers'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a. Supply of machinery, apparatus, and tools necessary for work on a ship;
 b. Supply of medicine, hygiene products, and medical guide books necessary to maintain hygiene on a ship;
 c. Installation of lighting devices, safety signs, and other auxiliary devices for safety for work;
 d. Installation facilities necessary to maintain an appropriate level of hygiene such as ventilation, skylights and lighting in accommodation, engine rooms and galleys, etc., maintenance of temperature, and prevention of noise and vibration, etc.;
 e. Supply of pesticides to get rid of mice or bugs from accommodation and storage rooms, etc.;
 f. Supply of tools necessary to measure oxygen or gases hazardous to human body, etc.;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oastal fishing vessels which are not equipped with refrigerating facilities;
 g. Supply of protective apparatus necessary to prevent injury from dangerous work such as work in hold, work aloft, welding, work involving heavy objects, work involving electricity, and fishing operation, etc.;
 h. Implementation of education necessary for safety on a ship and hygiene management; and
 i. Establishment and supply of safety and hygiene rules on a ship necessary to prevent injury from work and maintain hygiene therein.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 1. 양모기·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 2. 하역용 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 3.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 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 4. 몸의 중심을 선체 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6.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 7.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 8.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 9. 금속의 용접·절단 또는 가열작업
-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위험한 선내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에서 인정한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자
 - 2.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3. 선박직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

Article 3(Dangerous Work on Ship, etc.)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 (1) Dangerous work under Article 82 (2) of the Act means the work as follows:
 - a. Work involving an operation of capstan or winch;
 - b. Work involving an operation of cargo handling equipment;
 - c. Work involving an use of auxiliary equipment at two meters or higher above the ground;
 - d. Work with worker's balance on the outside of hull;
 - e. Work at a site with potential risk of lack of oxygen;
 - f. Work to detect harmful gases to human body;
 - g. Work to detect the status of harmful cargo;
 - h. Electric work with risk of electric shock; and
 - i. Work to weld, cut, or heat a metal.
- (2) A shipowner shall not have a person engaged in a dangerous work on a ship unless he/she falls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under Article 82 (2) of the Act:
 - a. A person who has either working experience in a work under the above provision of each sub-paragraph for six months or longer or is able to perform the corresponding work thereto and holds a relevant qualification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 b. A person who has completed the training for watch-keeping ratings under the provision of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eafarers' Act; and
 - c. A person who has obtained a certificate of competency under Article 4 of the Ship Officer's Act.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4조(안전담당자의 선임)

- ① 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 ②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Article 4(Appointment of Ship Safety Officer)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 (1) A shipowner shall appoint one ship safety officer among engineers who either served as a chief engineer officer on a ship or has seagoing service of two years or longer to prevent danger of work on a ship and to implement matters prescribed in this rule under Article 82 (2) of the Act; provided, however, that a master may be appointed as a ship safety officer in case that the number of seafarers is less than ten persons on board.
- (2) A chief officer shall be appointed as a ship safety officer of dangerous goods in addition to the person on a ship carrying dangerous goods under the provision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rules on carriage and storage of dangerous goods at all times; provided, however, that a ship may be exempted therefrom in case that the number of seafarers is less than ten persons onboard.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5조(안전담당자의 임무)

- ①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선내작업상의 안전도 확인 및 적절한 작업인원의 배치
 - 2. 안전장비·위험탐지기구·소화기구·보호기구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용구 등의 비치 및 점검
 - 3. 작업 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 4.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 5.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6.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 ②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rticle 5(Duties of Ship Safety Officer)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 (1) A ship safety officer shall perform the duties under any of the following:
 - a. Check for safety level of work on a ship and arrangement for appropriate number of seafarers;
 - b. Equipping with and inspection for safety equipment, danger detection devices, fire equipment, protection equipment and other facilities and tools for danger prevention;
 - c. Emergency or preventive measures when dangerous incident has occurred or is likely to occur during work;
 - d. Education for how to use safety equipment and protective equipment, safety rul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afety of work;
 - e. Preparation and keeping records for safety management on a ship; and
 - f.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afety measures.
- (2) A ship safety officer of dangerous goods shall perform the duties under any sub-paragraph of above paragraph pursuant to the handling thereof.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6조(개선의견의 제출 등)

- ① 안전담당자 및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한 개선의견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선장이 개선의견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견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견을 보고받은 선박소유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rticle 6(Submission of Improvement Proposals, etc.) of the 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 (1) A ship safety officer or ship safety officer of dangerous goods shall prepare and keep records of improvement proposals regarding his/her duties concerned and report thereof to a master; provided, however, that the improvement proposal may be directly reported to a shipowner where a master to whom the improvement proposal is reported has failed to report to a shipowner.

		<p>(2) Where a master has the report of the improvement proposal, he/she shall review and report thereon to a shipowner.</p> <p>(3) A shipowner to whom the improvement proposal is reported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improvement.</p>
<p>12</p>	<p>선내 의료 관리 On-board medical care (Reg. 4.1)</p>	<p>「선원법」 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p> <p>③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p> <p>⑤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⑥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Article 82(Responsibility of Shipowners etc.) of the Seafarers' Act</p> <p>(3) A shipowner shall provide seafarers with protective equipment and protective devices, etc., and prohibit them from using machinery without a protective device.</p> <p>(5) A shipowner shall observe the matter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danger when seafarers work on a ship, provision of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maintenance of hygiene on the ship and providing training thereon, etc.</p> <p>(6) Unless there is a unavoidable reason, where a seafarer requests a master to allow him/her to be treated for his/her injury or disease in a medical institution in the port where a ship is calling, the master shall not refuse such a request.</p> <p>「선원법」 제84조(의사의 승무)</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p>Article 84(Medical Doctors in the Service of a Ship) of the Seafarers' Act</p> <p>The owner of any of the following ships shall have a doctor work on board the ship: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hipowner has obtained approval from the competent maritime affairs and port authorit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ship engaged in an international voyage for not less than three days and the maximum number of persons on board is not less than 100 (excluding a fishing vessel); A fishing vessel engaged in mother ship type fisher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선원법」 제85조(의료관리자)</p> <p>①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p>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이하 "의료관리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p> <p>④ 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내의 의료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p>

Article 85(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of the Seafarers' Act

- (1) The owner of any of the following ships among ships that need not have a doctor work on board shall have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on a ship: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a. A ship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more than 5,000 tons and the navigation area of which is an ocean area assigned pursuant to Article 8 (3) of the Ship Safety Act;
 - b. A fishing vessel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2)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elected from among seafarers (excluding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who have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for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3):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shipowner obtains approval therefor from the competent maritime affairs and port authorities owing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for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under paragraph (2) to a person who has passed an examination conducted by him/he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r a person whom he/she deems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equal to or higher than the level of a person who has passed the examination.
- (4)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shall be engaged in business necessary for medical service in a ship,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선원법」 제86조(응급처치 담당자)

- ① 제84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이하 "응급처치 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1.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 2.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
- ② 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 담당자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Article 86(Person in Charge of Medical First Aid) of the Seafarers' Act

- (1) The owner of any of the following ships among ships that need not have a doctor under Article 84 or a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 under Article 85 (1) work on board shall have a seafarer in charge of first aid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in charge of first aid") in a ship:
 - a. A ship the navigation area of which is more than the coastal waters (excluding a fishing vessel);
 - b. A passenger ship the passenger capacity of which is not less than 13 persons.
- (2) A shipowner shall elect a person in charge of first aid from among seafarers who have completed education concerning first ai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

- ①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 2. 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 3.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 4. 의료기구, 의약품, 그 밖의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 등의 비치·보관 및 관리
 - 5. 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 6.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구, 의약품 등의 비치·보관 및 관리는 의료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 ③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표준의료보고서에 따라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p>Article 52(Affairs of Medical Care Person)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p> <p>(1) Affairs of medical care person under Article 85 (4)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Health management and health instruction for seafarers; b. Maintenance of hygiene of work and habitable environment on a ship; c. Maintenance of hygiene of food and water; d. Maintenance and keeping of medical equipment, medicine, other hygienic goods and medical books, etc.; e. Management and preparation of medical care records on a ship; and f. Matters pursuant to medical care of patients onboard a ship. <p>(2) Maintenance and keeping of medical equipment and medicine under paragraph (1) d, shall comply with medical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Contents of Medicine Chests onboard.</p> <p>(3) Master and medical care person shall record and manag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onboard a ship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medical report under Attached Form No. 25 (2). In such cases, information on the form shall be kept confidential.</p>
<p>13</p>	<p>선내 불만처리절차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Reg.5.1.5)</p>	<p>「선원법」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p> <p>①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그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p> <p>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4. 제3호에 따른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5. 해양항만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p>Article 129(Reporting to Supervisory Agencies) of the Seafarers' Act</p> <p>(1) Where a seafarer recognizes the existence of the fact that a shipowner or master has violated this Act, the Labour Standard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he/she may lodge a complaint with the shipowner or master, or report the fac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seafarers' labour inspector or the Seafarers Labour Relation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p> <p>(2) A shipowner shall not cancel a seafarer employment contract with a seafarer or treat him/her unfavorably for reason that he/she has lodged a complaint or filed a report thereon pursuant to paragraph(1).</p> <p>(4) A shipowner shall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handling of complaints on his/her ship and post a notice of the same in a conspicuous place on a ship, including the matter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handle complaints lodged by seafarers pursuant to paragraph(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Ways through which a seafarer may raise a complaint on a ship; b. Procedural chart that shows handling of a complaint on a ship; c. A person in charge of grievance settlement who deals with the complaint of a seafarer on a ship; d. Matters concerning roles and authority of a person in charge of grievance settlement on a ship; and e. Contact information of institutions related to seafarers' labor and human right such a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eafarers Labour Relations Commission, etc.

	<p>「선원법 시행령」 제4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근로기준법」이나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Article 49(Report to Supervisory Agencie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 In case that a seafarer is to report pursuant to Article 129 (1) of the Act, he/she shall submit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to prove the fact that the shipowner or master has violated the Act, the Labour Standards Act or orders issued pursuant to the Act.</p>
<p>14 임금의 지급 Payment of wages (Reg. 2.2)</p>	<p>「선원법」 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p> <p>Article 30(Prohibition of Compulsory Savings) of the Seafarers' Act No shipowner shall enter into a contract that stipulates compulsory savings or the management of savings annexed to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p> <p>「선원법」 제31조(상계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Article 31(Restrictions on Offset) of the Seafarers' Act No shipowner shall offset his/her claim on a seafarer by his/her obligation to pay wages;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amount of offset does not exceed 1/3 of ordinary wages.</p> <p>「선원법」 제52조(임금의 지급)</p> <p>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p> <p>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p> <p>Article 52(Payment of Wages) of the Seafarers' Act</p> <p>(1) A shipowner shall pay wages in full in currency directly to a seafarer; provided, however, that where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a collective agreement, he/she may deduct part of wages or pay wages by means other than currency.</p> <p>(2) A shipowner shall pay wages on a regular fixed date not less than once a month;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payment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ages paid temporarily, an allowance, and others corresponding thereto.</p>

-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seafarer requests or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a collective agreement, a shipowner shall pay all or some of wages to his/her family or other person designated by him/her in currency or by means of deposit with a financial company, etc.
- (4)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seafarer who is in service onboard a ship requests, a shipowner shall have a master pay some of the wages to a seafarer directly in currency in common use in the port of call.
- (5) Where wages are calculated by days, 30 days shall be regarded as one month.

「선원법」 제53조(기일 전 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rticle 53(Payment before Due Date) of the Seafarers' Act

Where a seafarer requests a shipowner to pay wages to make up for expenses incurred in childbirth, disease or accident of a seafarer or his/her family, or other extraordinary case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shipowner shall pay him/her for labour he/she has already provided even before the due date of payment of wages.

「선원법」 제58조(임금대장)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Article 58(Payroll) of the Seafarers' Act

A shipowner shall keep a payroll and state matter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uch as matters that become the basis of the calculation of wages, etc., therein, whenever he/she pays wages.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Article 59(Minimum Wages) of the Seafarers' Act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ems it necessary, he/she may fix the minimum amount of wages of seafarers. In such cases, he/she shall seek advice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선원법」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1.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한 선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상휴식을 받은 선원은 제외한다)
 - 2. 휴일에 근로를 한 선원
-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종(船種), 선박의 크기, 항해 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 ⑥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같음하여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rticle 62(Overtime Work Allowance) of the Seafarers' Act

- (1) A shipowner shall pay any of the following seafarers an amount at least equivalent to 150/100 of ordinary wages for his/her overtime work or holiday work as an overtime work allowance:
 - a. A seafarer who does overtime work pursuant to Articles 60 (1), (2) and (6)(excluding a seafarer who is given a rest in compensation therefor pursuant to paragraph (7) of the same Article); or
 - b. A seafarer who works on a holiday.

-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shipowner may put a system into operation by which he/she pays a certain fixed amount of money as an overtime work allowanc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type of ship, the size of ship, working level and performance of a seafarer depending upon the trading areas, as stipulated by a collective agreement, the rules of employment or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 (5)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shipowner shall grant additional one day paid leave for every one month of working onboard to the number of days of paid leave under Article 70 for overtime work of 4 hours a week among overtime work under Articles 60 (1), (2) and (6) in lieu of paying an overtime work allowance.

「선원법」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Article 152(Prohibition of Transfer or Foreclosure) of the Seafarers' Act

The right to receive unemployment allowance, retirement allowance, expenses for repatriation, repatriation allowance, the relief expenses for abandonment, injury and disease compensation or accident compensation shall not be subject to transfer or foreclosure.

「선원법 시행령」 제17조(임금의 지급)

-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력수당 또는 상여금
 - 3.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 1. 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 2.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사항
 - 3. 적용환율에 관한 사항

Article 17(Payment of Wage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

- (1) "Wages paid temporarily, an allowance, and others corresponding thereto" in the proviso of Article 52 (2) of the Act shall mea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a. Continuous work allowance to be paid for work that is sustained for certain periods exceeding one month;
 - b. Incentive and efficiency allowance, or bonus that is calculated for reasons that continue more than one month; or
 - c. Other types of allowance that are paid irregularly.
- (2) A shipowner shall provide a seafarer with details of wages that include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ursuant to Article 52 of the Act, when he/she pays wages:
 - a. Matters concerning the amount of wages;
 - b. Matters concerning items that consist wages; and
 - c. Matters concerning applied exchange rates.

「선원법 시행령」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1. 선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고용연월일 및 직책
- 2.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 3.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 4.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5. 임금의 내역별 금액
- 6.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p>Article 20(Matters to be Recorded in Wages Ledger)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h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mployment date, and duty of a seafarer; 2. The matters used as basis for calculation of wage and family allowances; 3. Days and hours of work; 4. Hours of work in case of overtime work or holiday work; 5. Amount of wages by categories; and 6. Reasons for deduction and the deducted amount in case of deduction in part of wages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52 (1) of the Act. <p>「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p> <p>Article 36 (Settlement of Payments) of Labour Standards Act When a worker dies or retires, the employer shall pay the wages, compensations, and other money or valuables within 14 days after the cause for such payment occurred: Provided, That the period ma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be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p>
<p>15</p>	<p>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Financial security for repatriation (Reg.2.5)</p>	<p>「선원법」 제38조(송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의 요청에 의하여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6개월 이상 승무하고 송환된 선원에게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2.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3.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은 송환 중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게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p>Article 38(Repatriation) of the Seafarers' Act</p> <p>(1) Where a seafarer leaves a ship at the port which is not the place of his/her residence or a place where he/she concluded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a shipowner shall repatriate him/her to a place where he/she wishes to be repatriated, either a place of his/her residence or a place where he/she concluded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without delay at the cost of the shipowner and on his/her own responsibility;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hipowner reimburses expenses incurred in the repatriation at the request of the seafarer.</p> <p>(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seafar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shipowner may claim expenses incurred in the repatriation against him/her; provided, however, that the shipowner shall not claim an amount of money equivalent to 50/100 of the expenses incurred in the repatriation of a seafarer repatriated after he/she has been in service onboard a ship for six months or mor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Where a seafarer leaves a ship at his/her discretion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b. Where a seafarer leaves a ship after he/she has been disciplined by being made to leave the ship pursuant to Article 22 (3); or c. Where a seafarer falls under the reasons prescribed by a collective agreement, the rules of employment or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3) The amount of money to be spent by a shipowner pursuant paragraph (1) shall include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and meals expenses incurred in the repatriation and other expense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4) In making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with a seafarer, no shipowner shall request the seafarer to pay expenses for repatriation in advance.

「선원법」 제42조의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구제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선박소유자가 제52조에 따른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원과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경우
3. 선박소유자가 이 법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유기구제보험등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른 송환비용
2. 제39조에 따른 송환수당
3. 제1항제3호에 따른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유기구제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기구제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Article 42-2(Taking out Relief Insurance, etc. for Abandonment) of the Seafarers' Act

(1) A shipowner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take out relief insurance policies or join mutual aids, both of which ar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lief insurance policies, etc. for abandonment"), so that he/she fully reliefs seafarers who are abandoned due to cau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a. Where a shipowner fails to repatriate a seafarer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8 (1) or pay the expenses for repatriation pursuant to the proviso of the same Article;
- b. Where a shipowner fails to pay wages of 2 months or longer and has unilaterally severed their ties with a seafarer; and
- c. Where a shipowner fails to provide for goods or services, such as food, drink, fuel and medical care necessary for life onboard a ship.

(2) A relief insurance policies, etc. shall guarantee the payment of expenses falling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a. Expenses for repatriation under Article 38;
- b. Repatriation allowance under Article 39; and
- c. Expenses for goods or services, such as food, drink, fuel and medical care necessary for life onboard a ship.

(3) A shipowner who buys insurance policies, etc. shall designate a seafarer as the insured so that he/she directly claims the insured amount to an relief insurance company, etc.

선원법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p>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p> <p>Article 56 (Taking out Insurance Guaranteeing Wage Claims) of the Seafarers' Act</p> <p>(1) A shipowner (including an association of shipowners;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shall take out an insurance or become a member of mutual ai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raise funds to guarantee the payment of wages and a retirement allowance not receivable by a retired seafar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wages in arrears") fo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shipowner's bankruptcy, etc.: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shipowner who is subject to funds to guarantee the payment of wages in arrears of seafarers in accordance with other Acts.</p> <p>(2) An insurance, mutual aid or funds under paragraph (1) shall guarantee the payment of wages in arrears falling under all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t leas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Wages for the latest four months under Article 52; b. A retirement allowance for the latest four years under Article 55. <p>(3) Notwithstanding Article 469 of the Civil Act, where a retired seafarer claims wages in arrears, an insurer, mutual aid or operator of funds under paragraph (1) shall pay wages in arrears in lieu of a shipowner.</p> <p>「선원법」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구제비용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p>Article 151(Posting of Documents on a Ship, etc.) of the Seafarers' Act</p> <p>(1) A shipow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post the following documents in a conspicuous place inside of the ship,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b. Documents in which the repatriation procedures, the taking out of seafarer abandonment insurance, its procedures to claim and pay expenses incurred in preventing seafarers from abandonment,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stated; c. Documents in which insurance guaranteeing wage claims, its procedures to claim and pay wages in arrears pursuant to Article 56,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stated; and
<p>16</p> <p>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Financial security for shipowners' liability (Reg.4.2)</p>	<p>「선원법」 제106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상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Article 106(Taking out Insurance, etc. for Accident Compensation, etc.) of the Seafarers' Act

- (1) A shipowner shall take out insurance policies or join mutual aids, both of which ar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policies, etc."), so that he/she fully covers accident compensation described herein for all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board a relevant ship of his or hers.
- (2) In the case that a shipowner buys insurance policies or joins mutual aids, he/she shall make insured amount not less than average on-board wages.
- (3) A shipowner who buys insurance policies, etc. shall designate a seafarer as the insured so that he/she directly claims the insured amount to an insurance company, etc.(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company, etc.").

「선원법」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4.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여부, 보험금의 청구,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Article 151(Posting of Documents on a Ship, etc.) of the Seafarers' Act

- (1) A shipow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post the following documents in a conspicuous place inside of the ship,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d. Documents stating the taking out of an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claim/payment procedures of compensation,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성명(Name):
 직책(Title):
 서명(Signature):
 장소(Place):
 날짜(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실질적 동등사항(Substantial equivalencies)

(주석 :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할 것)
 (Note : Strike out the statement which is not applicable)

협약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실질적 동등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substantial equivalencies, as provided under Article VI, paragraphs 3 and 4, of the Convention, except where stated above, are noted (insert description if applicable):

.....

어떠한 실질적 동등사항도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No substantial equivalency has been granted.)

성명(Name):
 직책(Title):
 서명(Signature):
 장소(Place):
 날짜(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면제사항(Exemptions)

(주석 :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할 것)
 (Note : Strike out the statement which is not applicable)

협약의 제3장에 따라 책임당국에 의해 인정된 면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exemptions gra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provided in Title 3 of the Convention are noted:

.....

어떠한 면제사항도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No exemption has been granted.)

성명(Name):
 직책(Title):
 서명(Signature):
 장소(Place):
 날짜(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Part II

다음 조치사항은 검사 전후에 지속적으로 그 요건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선언서가 첨부되어 있는 해사노동적합증서에서 명시된 선박소유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The following measures have been drawn up by the shipowner, named in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to which this Declaration is attached, to ensure ongoing compliance between inspections.

- | | | |
|----|---|-----|
| 1 | 선원의 최소연령 Minimum age (Reg.1.1) | [] |
| 2 | 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ion (Reg.1.2) | [] |
| 3 | 선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seafarers (Reg.1.3) | [] |
| 4 | 선원근로계약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Reg.2.1) | [] |
| 5 | 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Use of any licensed or certified or regulated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Reg.1.4) | [] |
| 6 | 근로 또는 휴식 시간 Hours of work or rest (Reg.2.3) | [] |
| 7 |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Manning levels for the ship (Reg.2.7) | [] |
| 8 | 거주설비 Accommodation (Reg.3.1) | [] |
| 9 | 선내 오락시설 On-board recreational facilities (Reg.3.1) | [] |
| 10 | 식량 및 조달 Food and catering (Reg.3.2) | [] |
| 11 |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Health and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Reg.4.3) | [] |
| 12 | 선내 의료 관리 On-board medical care (Reg.4.1) | [] |
| 13 | 선내 불만처리절차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Reg.5.1.5) | [] |
| 14 | 임금의 지급 Payment of wages (Reg.2.2) | [] |
| 15 | 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Financial security for repatriation (Reg.2.5) | [] |
| 16 |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Financial security for shipowners' liability (Reg.4.2) | [] |

※ 제1부의 각 항목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사항을 위 각 항목의 아래에 기술한 후 해당 항목에 [x]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After describing the measures taken to ensure compliance with each of the items in Part I below those items, please check each of the relevant boxes by [x] mark).

본인은 위의 조치사항들이 그 검사와 제1부에 규정된 요건에 지속적으로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above measures have drawn up to ensure ongoing compliance, between inspections, with the requirements listed in Part I.

선박소유자명(Name of shipowner): _____

선박소유자의 주소(Address of shipowner): _____

서명자의 성명: _____

(Name of the authorized signatory)

서명자의 직책: _____

(Title of the authorized signatory)

서명자의 서명: _____

(Signature of the authorized signatory)

날 짜 (Date): _____

선박소유자의 서명 또는 도장: _____

(Stamp or seal of the shipowner)

위의 조치사항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검토하였으며, 이 선박에 대한 검사 후, 이 선언서 제1부에 규정된 요건에 최초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제A5.1.3조제10(b)항에 따라서 규정된 목적에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The above measures have been review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e been confirmed as satisfying the purposes set out under Standard A5.1.3, paragraph 10 (b), regarding measures to ensure initial and ongoing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set out in Part I of this Declaration after carrying out the inspection for this ship.

성 명(Name): _____

직 책(Title): _____

주 소(Address): _____

서 명(Signature): _____

장 소(Place): _____

날 짜(Date):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7. 7. 19.>

(제3쪽 중 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해사노동적합증서
MARITIME LABOUR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는 「선원법」 제1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 지방해양수산청장(인증검사 대행기관)이 발급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인증검사 대행기관) 주소: _____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V and Title 5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referred to below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Recognized Organization)
Address of the Office: _____

선박의 제원(Particulars of ship)

선명(Name of ship) : _____
선박번호(Distinctive number or letter) : _____
선적항(Port of registry) : _____
등록일자(Date of registry) : _____
총톤수(Gross tonnage) : _____
IMO 번호(IMO number) : _____
선박의 종류(Type of ship) : _____
선박소유자명(Name of shipowner) : _____
선박소유자의 주소(Address of shipowner) : _____

210mm×297mm[백상지 120g/㎡]

(제3쪽 중 2쪽)

이 증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합니다.

1. 이 선박은 「선원법」 및 그 하위법령의 요건과 첨부된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증되었습니다.
2. 「2006 해사노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록 A5-1에 규정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이 협약을 이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내요건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국내요건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This is to certify:

1. That this ship has been inspected and verified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visions of the attached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2. That the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specified in Appendix A5-1 of the Convention were found to correspond to the national requir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implementing the Convention. These national requirements are summarized in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Part 1.

이 증서는 「선원법」 제123조 및 제137조에 따른 검사를 수검할 것을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inspections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5.1.3 and A5.1.4 of the Convention.

이 증서는 _____에서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when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issued at _____ on _____ is attached.

이 증서의 근거가 되는 검사 완료일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입니다.

Completion date of the inspection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was _____

이 증서는 _____에서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발급되었습니다.

Issued at _____ on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cognized Organization)
(인증검사 대행기관)

(제3쪽 중 3쪽)

중간인증검사의 확인**Endorsements for mandatory intermediate inspection
and, if required, any additional inspection**

이 증서는 본선이 「선원법」 제137조에 따라 검사되었고, 협약 부록 A5-1에 명시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내요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hip was inspected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5.1.3 and A5.1.4 of the Convention and that the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specified in Appendix A5-1 of the Convention were found to correspond to the national requir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implementing the Convention.

중간인증검사 서명(Signed) : _____
(Intermediate inspection) 장소(Place) : _____
날짜(Date) :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cognized Organization)
(인증검사 대행기관)

추가배서(요구될 경우) (Additional endorsement, if required)

이 증서는 본선이 협약 제A3.1조제3항(재등록 또는 거주구역의 주요개조)에 의한 요구 또는 다른 사유에 따라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요건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를 검증할 목적으로 특별인증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hip was the subject of an additional inspection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at the ship continued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requirements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s required by Standard A3.1,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re-registration or substantial alteration of accommodation) or for other reasons.

특별인증검사(요구될 경우) 서명(Signed) : _____
(Additional inspection, 장소(Place) : _____
if required) 날짜(Date) :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cognized Organization)
(인증검사 대행기관)

특별인증검사(요구될 경우) 서명(Signed) : _____
(Additional inspection, 장소(Place) : _____
if required) 날짜(Date) :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cognized Organization)
(인증검사 대행기관)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7. 19.>

(제2쪽 중 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INTERM MARITIME LABOUR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는 「선원법」 제1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 지방해양수산청장(인증검사 대행기관)이 발급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인증검사 대행기관) 주소 _____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V and Title 5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referred to below as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Recognized Organization)
Address of the Office : _____

선박의 제원(Particulars of ship)

선명(Name of ship) : _____

선박번호(Distinctive number or letter) : _____

선적항(Port of registry) : _____

등록일자(Date of registry) : _____

총톤수(Gross tonnage) : _____

IMO 번호(IMO number) : _____

선박의 종류(Type of ship) : _____

선박소유자명(Name of shipowner) : _____

선박소유자의 주소(Address of shipowner) : _____

210mm×297mm[백상지 120g/㎡]

(제2쪽 중 2쪽)

이 증서는 「2006 해사노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기준 제 A5.1.3조 제7항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합니다.

1. 이 선박은 아래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인증을 고려하여 협약 부록 A5-1에 수록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검사되었습니다.
2. 선박소유자는 이 선박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관할청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에게 입증하였습니다.
3. 선장은 협약의 요건과 이행책임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4.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계 정보가 관할청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에게 제출되었습니다.

This is to certify, for the purposes of Standard A5.1.3, paragraph 7, of the Convention, that:

1. this ship has been inspected, as far as reasonable and practicable, for the matters listed in Appendix A5-1 to the Convention, taking into account verification of items under 2, 3 and 4 below:
2. the shipowner has demonstra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recognized organization that the ship had adequate procedures to comply with the Convention:
3. the master is familiar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for implementation: and
4. relevant information has been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recognized organization to produce a Declaration of the Maritime Labour Compliance.

이 증서는 「선원법」 제137조에 따른 검사를 수검할 것을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inspections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5.1.3 and A5.1.4.

상기 제1호에 규정하는 검사의 완료일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입니다.

Completion date of the inspection referred to under 1 above was _____.

이 증서는 _____에서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발급되었습니다.

Issued at _____ on _____.

지방해양수산청장



Director General of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Recognized Organization)
 (인증검사 대행기관)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 7. 19.>

인증검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신청인 성명	신청인 부서	
	주 소 (전화번호 :)		
	전 화	팩 스	
검사종류	<input type="checkbox"/> 최초인증검사 <input type="checkbox"/> 갱신인증검사 <input type="checkbox"/> 중간인증검사 <input type="checkbox"/> 임시인증검사 <input type="checkbox"/> 특별인증검사		
검사사유 (특별인증검사 만 기재)			
선박상세	선명	선종	항해구역
	선박번호	IMO 번호	출톤수
해사노동적합증서 유효일		검사 희망일	
검사를 받고자하는 장소		대리점 연락처	

「선원법」 제137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최초, []갱신, []중간, []임시, []특별 인증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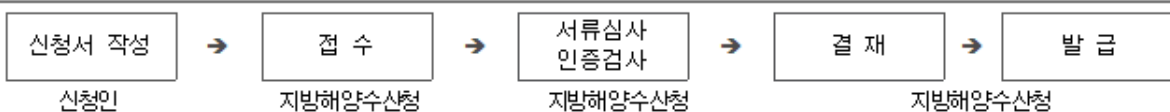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 해사노동 적합선언서 제1부, 제2부(각 2부씩) - 선박국적증서(국/영문) 사본 - 국제톤수증서(ITC) 사본	수수료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름.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결용품)]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신설 2014.1.8>

(앞쪽)

MLC INSPECTOR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REPUBLIC OF KOREA

60mm × 90mm [보존용지 (1종) 120g/㎡]

(뒤쪽)

ID No. ____

MLC INSPECTOR ID CARD

The bearer of this identification card is duly appointed as a Inspector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regulation 5.1.4 of Maritime Labor Convention 2006

date of issu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색상: 연하늘색)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3.24>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④업무범위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